

# 월간 재정포럼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 ● 현안분석

---

주요 외국의 지방소득세제

---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방지

- OECD의 논의 및 회원국의 관련제도 현황

---

개정 노동법의 쟁점과 과제

---

## ● 정책연구

---

## ● 정책토론포트

---

## ● 재정통계

---

법인세관련 통계(Ⅱ)

## C O N T E N T S

### 권두칼럼

2 시장의 질 향상과 거시경제정책의 새로운 역할 /박종규

### 현안분석

6 주요 외국의 지방소득세제 /박정수  
 18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방지 - OECD의 논의 및 회원국의 관련제도 현황 /안종석  
 33 개정 노동법의 쟁점과 과제 /박기백

### 정책연구

46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방향 /김진수  
 49 상속·증여세제의 합리화 방안 /한상국·배준호·이광재

### 정책토론포트

54 접대비 관련세제의 개편방향 /손원익

### 정책흐름

59 국세 통합시스템 개통  
 68 1997년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72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76 무역수지개선을 위한 관세제도 운영방안  
 80 가업상속에 관한 지원 확대  
 83 1996년 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추정  
 85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지분 변동현황  
 87 부동산실명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현황

### 재정통계

91 법인세관련 통계(Ⅱ)

# 시장의 질 향상과 거시경제정책의 새로운 역할

박종규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현 시점에서 거시경제 운영상 최대의 난제는 경상수지 개선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작년도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명목 GNP의 5% 가까이 확대되었으며 금년들어 1월중 통관기준 무역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1억 3천만달러보다 63.4%만큼 악화된 34억 8천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국제수지는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금년도 경상적자 규모가 200억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고 보고 성장률을 6% 내외로 유지하면서 경상적자를 150억달러 선에서 방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경상적자 축소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면 이는 당연한 선택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나 현재와 같은 경기하강 국면에 긴축기조를 펴려는 것은 소위 경기동행적(pro-cyclical) 운영을 되풀이 한다는 의미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그런데 거시경제 정책변수의 조절로써 이 목표를 달성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첫째, 총량변수와 경상수지 사이에는 상당기간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긴축기조에 의한 경상적자 축소효과는 당해연도가 아닌 차년도 이후에 주로 나타난다.

둘째, 개도국의 약진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정도에 이르렀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같은 나라들은 물론 냉전체제의 종식 이후 중국, 베트남과 동유럽 체제전환국들마저 세계시장을 놓고 왕성한 수출 드라이브 전략을 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도국들의 수출상품이 생산능력 과잉상태에 빠질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다. 작년도 우리나라 무역적자의 대부분은 주력 수출상품의 국제시세 급락으로 설명되지만 그것이 지나가는 비(雨)처럼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경쟁국간의 생산능력 과잉상태에 기인하였다면 우리나라 국제수지 문제는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 어려운, 중·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보아야 한다.

이처럼 시야를 넓혀 우리 주변의 큰 흐름을 살펴볼 때, 우리가 처한 상황은 그야말로 근본적인 자기변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절실히 느끼게 한다. 자본과 기술의 수입에 의존하는 수출 드라이브 전략으로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더 이상 불가능하며 주력 수출품의 국제시세가 회복되거나 엔고가 다시 찾아오기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 나갈 수 없는 행운에 우리나라의 장래를 걸 수는 없다.

우리 경제의 문제점은 여러가지 말로 표현되어 왔다. 고임금, 고지가, 고금리, 고물류비 등 비용요인들과 저효율, 저기술, 저생산성 등 효율요인들을 지칭하여 논자의 취향에 따라 3고 2저에서부터 9고 5저까지의 조합(combination)이 일컬어져 왔으며 이들을 통칭하여 고비용-저효율 구조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고비용-저효율 구조는 우리가 도려내야 할 환부라기보다는 하나의 증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 원인이 고비용-저효율에 있다는 말은 기운이 없는 환자에게 '당신 배가 아프기 때문에 기운이 없는 것이요'라고 설명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고금리와

시장의 질 향상을 위한 자기 변신의 과정에는 상당한 고통이 수반될 수 있으며  
이것이 조려할 수 있는 실물경제에 대한 고통은 최소화하여 주는 데에 거시경제 정책의 새로운 역할이 있다.

고임금이 문제이니 금리를 내려주고 임금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는 식의 대응은 그야말로 대증요법을 요구하는 것, 치료약이 아닌 진통제를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글을 통하여 우리나라 성장전략의 공과를 평가해 보려는 의도는 없으나 현재의 고비용-저효율의 근저에는 성장위주의 전략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 새로운 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과거의 성장전략을 대체할만한 이 시대의 새로운 전략이 있다면 시장의 질 향상이 있을 뿐이다. 시장의 신호(signal)에 둔감하여도 무방했던 경직적인 체질을 갖기까지는 수많은 규제는 물론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보호가 기여한 바 크며 이번 기회에 이러한 요소들은 사라져야 한다.

거시경제 정책변수의 조절만으로 적자기조의 불식이 요원하고 우리 경제의 앞날마저 불투명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시장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법규·판행·인식의 개선이 거시경제 정책과 아울러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전략은 더 이상 우리만의 비법이 아니라 수많은 개도국들에 의해 모방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효험을 기대할 수 없다.

시장의 질을 향상시킴에 있어서 정부규모를 무조건 축소시킨다고 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는 않는다. 축소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확대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다. 통제기능은 사라져야 하지만 서비스 기능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 수는 현재의 여섯명에서 대폭적으로 늘어나야 하며 시장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정

책수립 기능은 새로이 추가되어야 한다.

시장의 질 향상을 위한 자기 변신의 과정에는 상당한 고통이 수반될 수 있으며 이것이 초래할 수 있는 실물경제에 대한 고통을 최소화하여 주는 데에 거시경제 정책의 새로운 역할이 있다. 과거에는 '경제에 대한 여파'를 우려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개선이 뒤로 미루어지거나 그 내용이 변질되어 온 경우가 종종 있었음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수술대에 몸을 맡기되 그로 인한 고통을 거시경제적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최소화하는 것이다. 마치 한 손가락의 설탕이 몸에 좋은 쓴 약을 쉽게 삼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말과 같다. 그렇다고 해서 당뇨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노동법 개정이나 금융개혁이 인플레이션보다는 실업을 유발시킬 것으로 판단된다면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지 말고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두고 대증요법이라고 깎아 내려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경제안정화라는 거시경제 정책의 전통적 역할에 충실한 방향이라고 본다.

정부를 지켜보는 우리의 시각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삶의 질 향상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하여왔지만 시장의 질 향상 없이는 삶의 질 향상을 기약할 수 없다는 점을 이제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되었다. 의사에 대한 신뢰 없이 '해내는가 어디 보자'라는 식으로 바라본다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다. 현대 의학에 있어서도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가 강조되듯이 시장의 질 향상도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시장주체와 정부간의 이해와 합심이 중요하다. KIP

# 현안분석



주요 외국의 지방소득세제 / 박정수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방지 / 안종석  
- OECD의 논의 및 회원국의 관련제도 현황

개정 노동법의 쟁점과 과제 / 박기백

# 주요 외국의 지방소득세제

박 정 수/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지역주민들은 원칙적으로 자신들이 소비할 지방공공재가 자신들의 선호와 부담에 의해 공급되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서서히 인식하게 되었다.

## I. 문제의 제기

우리는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를 계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정치·경제적인 환경하에서 지방행정과 재정이 운영되게 된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원칙적으로 자신들이 소비할 지방공공재가 자신들의 선호에 따라 자신들의 부담에 의해 공급되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서서히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지속적인 중앙집권화와 불균형 경제성장의 산물로 고착된 지역간 심대한 경제력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확충만으로는 지방재정의 건실한 발전이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외국, 특히 지방자치의 연륜이 깊어 지역간 불균형이 그리 크지 않은 국가의 제도와 우리의 제도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와 분권화의 장점을 시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과세권(the power to tax) 확충이 필수적인바, 본고에서는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주요 외국의 지방소득세제를 소개하고 이를 유형별로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제Ⅱ절에서는 지방소득세제의 유형별로 중앙정부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와 지방정부간에 소득이라는 과세표준(tax base)을 어떻게 배분하는가에 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제Ⅲ절에서는 각론으로 주요 유형별로 대표적인 국가를 선정하여 각각의 지방소득세제의 현황을 소개하고, 제Ⅳ절에서는 이들 지방소득세제를 상호비교하는 것으로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 Ⅱ. 소득세원의 정부계층간 배분

재원의 정부계층간 배분문제는 조세의 세원을 어떻게 나누어 갖는가(tax assignment problem)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정부기능의 계층별 배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와 같은 기능배분에 따른 재정수요와 재원을 짝짓는 세원배분과 교부금제도의 설계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중앙집권적인 조세행정의 장점(납세협력비용과 징세행정비용의 절약)과 분권화된 공공서비스 공급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면서 지방정부 지출의 우선순위 선택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원을 지나치게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분명하다. Musgrave(1983)와 Shah(1994)에 의하면 정부계층간 세원배분의 이론적인 모형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조세행정의 효율성 기준이다.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이나 소비, 또는 재산에 대한 정보를 가장 잘 획득할 수 있는 정부계층이 그 세원에 대한 부과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인소득세의 경우, 국내와 국외의 다양한 지역에서 소득이 발생하게 되므로 중앙정부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반면에 재산세의 경우는 지방정부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비교우위에 있게 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법인세는 중앙정부에, 재산세는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재정수요 기준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재원수단(revenue means)은 가능한 한 재원수요(revenue needs)에 맞추어 적절하게 배분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안정화정책의 책임을 지는 중앙정부가 자원세를, 광역자치단체가 도로통행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 배분이 된다<sup>1)</sup>.

그러면 개인소득에 대한 조세부과권은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적절한가. 개인소득은 이동성이 높으며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세목이다. 공공서비스의

정부계층간 세원배분의 이론적인 모형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조세의 효율성 기준과 재정수요 기준이다.

1) 이 외에도 일반적으로 지방세로서의 적절한 기준으로 세원의 보편성, 응징성의 원칙이 추가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제·지방세 배분에 관한 이론적인 논의는 McLure (1983), Bahl(1995), 박정수(1996) 등을 참조.

대개의 경우 소득세원의 과세표준 설정권한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동일한 과표에 추가적으로 단일세율을 부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편익이 대부분 사업장보다 주거지에서 일어나므로 사업장 소재지보다는 주거지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앙정부가 재분배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누진적인 개인소득세는 중앙정부에 적절한 세원이다. 그러나 많은 개발도상국가에 있어 재분배적인 누진과세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도 최근에는 재분배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세원을 중앙정부와 공유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기초단위의 지방정부도 최근에는 공급 서비스가 재산세와 같이 전통적인 세원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소득세원의 공유에 참여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득세원을 여러 계층의 정부가 공유하는 경우 조세체계가 복잡해지고 조세정책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 과세표준의 설정권한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동일한 과표에 추가적으로 단일세율을 부가하여(piggy backing) 공동으로 활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법인세도 마찬가지로 이동성 있는 세원이어서 중앙정부에 의한 과세가 적절하다. 지방정부의 법인세 부과는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관행을 통해 낮은 세율 지역으로의 이동을 유발하여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법인세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중앙정부의 과세에 부가하여 공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세율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그리 크지 않아야 한다.

사업체등록세와 관계된 조세를 비롯한 사업소세는 기초자치단체보다 광역자치단체에 배분되는 것이 적절하다.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사업소세는 비거주자에게 조세부담을 이전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지역 거주자의 비용은 낮아지는 반면, 지역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지방서비스의 과다공급을 부추기게 되어 지방세의 지방서비스에 대한 비용정보(signaling costs) 기능이 적절하지 못하게 된다.

### Ⅲ. 주요 외국의 지방소득세제

각국에서 지방정부단위가 소득과세를 공유하는 방식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미국과 같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모두 각자의 세율을 정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독일과 같이 소득세를 공동세로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똑같은 비율로 공유하고 지방정부에도 일정부분을 할애하는 방식, 그리고 스웨덴과 같이 중앙정부가 징수하여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방식이 있다.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율구조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 1. 미국의 지방소득세제

주정부의 개인소득세는 1911년 위스콘신 주에서부터 현대적 형태를 띠기 시작하였다. 현재 일반 개인소득세는 44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과세하고 있으며, 법인 소득세는 46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과세하고 있다. 다만 뉴햄프셔 주와 테네시 주는 배당과 이자에 대해서만 과세하며(저축성 예금에 대한 이자세는 뉴햄프셔 주에서는 제외됨), 코네티컷 주에서는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주정부의 세율은 연방정부 세율보다 낮으며, 개인 소득공제(exemptions)가 높게 책정되고 있다. 주(州)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연방정부의 과세표준을 활용하고 있으며, 개인소득세를 과세하는 33개 주가 임의 선택의 표준공제를 시행하고 있고, 32개 주(州)는 주세를 위한 과세소득 계산시 연방소득세 신고서에 보고된 항목에서 시작한다. 모든 주에서 연방채권에 대한 이자를 차감함으로써 조정된 총소득 개념을 수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는 다른 주의 주채권이나 지방채권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고 있다.

개인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는 1948년 오리곤 주에서 도입하였는데, 현재 노스다코타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임금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 추정세액의 신고(declaration)를 요구함으로써 원천징수제를 보완하고 있다. <표 1>에는 미국 주정부 소득세의 세율체계를 정리하였다. 주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플로리다 주와 같이 주정부 수준에서 개인소득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 경우, 펜실베이니아 주와 같이 단일세율로 부과하는 경우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와 같이 누진적인 세율구조를 취하는 경우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미국은 1991년 현재  
12개 주에서  
지방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세율은 낮고  
안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 미국 주정부의 개인소득세율

(단위: %)

주	세율	주	세율
앨라배마 <sup>*</sup>	2.0~5.0	미주리 <sup>*</sup>	1.5~6.0
알래스카	n.t.	몬태나	2.0~11.0
애리조나	3.25~6.9	네브래스카	2.62~6.99
아칸소	1.0~7.0	네바다	n.t.
캘리포니아	1.0~11.0	뉴햄프셔	l.t.
콜로라도	5 <sup>1)</sup>	뉴저지	1.9~6.65
코네티컷	4.5	뉴멕시코	1.7~8.5
델라웨어 <sup>*</sup>	3.2~7.7	뉴욕 <sup>*</sup>	4.0~7.875
콜롬비아 특별구	6.0~9.5	노스캐롤라이나	6.0~7.75
플로리다	n.t.	노스다코타	14 <sup>2)</sup>
조지아	1.0~6.0	오하이오 <sup>*</sup>	0.743~7.5
하와이	2.0~10.0	오클라호마	0.5~7.0
아이다호	2.0~8.2	오리곤	5.0~9.0
일리노이	3	펜실베이니아 <sup>*</sup>	2.8
인디애나 <sup>*</sup>	3.4	로드아일랜드	27.5 <sup>3)</sup>
아이오와	0.4~9.98	사우스캐롤라이나	2.5~7.0
캔자스	4.4~7.75	사우스다코타	n.t.
켄터키 <sup>*</sup>	2.0~6.0	테네시	l.t.
루이지애나	2.0~6.0	텍사스	n.t.
메인	2.0~8.5	유타	2.55~7.2
메릴랜드 <sup>*</sup>	2.0~6.0	버몬트	25 <sup>4)</sup>
매사추세츠	5.95~12.0	버지니아	2.0~5.75
미시간 <sup>*</sup>	4.4	워싱턴	n.t.
미네소타	6.0~8.5	웨스트버지니아	3.0~6.5
미시시피	3.0~5.0	위스콘신	4.9~6.93
		와이오밍	n.t.

주: 1994년 11월 현재 자료임.

n.t.: 해당 주에 개인소득세가 존재하지 않음.

l.t.: 해당 주에 제한적인 개인소득세가 존재함.

# : 하나 이상의 지방정부가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주.

1) 조정된 연방과세소득의 5%.      2) 연방소득세납부액(credit 전)의 14%.

3) 연방소득세납부액의 27.5%.      4) 연방소득세납부액의 25%.

자료: ACIR, *Significant Features of Fiscal Federalism*, Vol. 1, 1995, pp. 49~50.

한편 시단위(municipalities)의 지방소득세를 가장 먼저 인정한 주는 펜실베이니아 주였다. 1932년 주법에 의해 필라델피아 시에서는 소득의 발생지를

고려하지 않고 거주자의 소득과 시에서 일하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1947년 펜실베이니아 주는 이 소득세에 대한 주법을 다른 지방에도 확대 시행하고 그 세율을 1%로 제한하였다.

1991년 현재 지방소득세는 12개 주에서 과세되고 있으나 인디애나 주, 켄터키 주, 매릴랜드 주, 미시간 주, 오하이오 주, 펜실베이니아 주 등에서만 폭넓게 실시되고 있다. 지방소득세율은 0.25(오하이오 주 학교구)~4%(필라델피아) 범위 내에서 낮고 안정적인 경향을 나타낸다. 그 외 시단위의 세율은 1~3%인데, 뉴욕시의 세율은 거주자의 경우 1.5~3.5%이고 비거주자의 경우 0.45%이다. 또한 오하이오 주의 학교구에 있어서 비거주자는 지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다른 거주지역에서는 펜실베이니아 주에서처럼 비거주자가 거주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지방자치세로 개인소득세와 함께 원천과세한 후 지방정부에 배분한다.

## 2. 스웨덴의 지방소득세제

스웨덴에서는 중앙정부 및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자치권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sup>2)</sup>(kommunerna)가 소득세 부과권을 갖는다. 그러나 그 재원의 대부분을 개인소득세 형태로 부과되는 지방세, 즉 지방자치세(kommunalskatten)로 충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세를 직접 징수하지 못하며, 개인소득세와 함께 원천과세되어 중앙정부에 납부된 세액 중에서 중앙정부로부터 해당분의 세액을 돌려받는다.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불은 매월 이루어지며, 지불규모는 전년도의 총과세 규모와 당해연도의 지방자치세율에 근거하고 인구의 변화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1993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세의 지불방법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당해연도의 과세규모를 예측하여 그 예측치를 지방자치세의 지불근거로 사용한다. 한편 법인에 대한 소득과세는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몫이며, 다른 나라와는 달리 소비과세 및 재산과세의 거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스웨덴은 1991년 세제개혁을 통해 소득항목을 근로소득, 자산소득, 그리고 사업소득의 세 가지 유형으로 통합하였다. 개인이 취득한 근로소득과 개인의 사업소득은 1991년부터 노동소득(forvarvsinkomst)이란 이름으로 단일

2) 1994년 현재 스웨덴의 지방자치단체는 23개의 주(lansstingskommun), 286개의 기초자치단체(primarykommun) 그리고 2,552개의 교회자치구(kyrkokommun)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여기에 자치단체협의단체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kommunerna)라 부른다. 정부조직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 중 중요한 것이 해당 자치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파세권이다.

스웨덴의 지방자치세는  
과세표준인 근로소득에  
비례세로 부과되며  
과세표준은 중앙정부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과 같다.

〈표 2〉 스웨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수입(1993년)

(단위: 억크루나)

중 앙 정 부		지 방 자 치 체	
총조세수입	3,160	총조세수입	2,507
소득세 <sup>1)</sup>	506	지방자치세 <sup>3)</sup>	2,497
개인소득세 <sup>2)</sup>	183		
법인소득세	323		
사회보장부담금	457	재화 및 용역세	10
재산세	229		
재화 및 용역세	1,964		
기타	4		

주: 1) 개인 및 법인의 소득, 이윤, 자본이득 및 봉급(payroll and workforce)을 포함함.  
2) 개인의 소득, 이윤, 자본이득 및 봉급을 포함함.  
3) 개인소득세.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of OECD Member Countries 1965~1994, 1995.

과세대상 소득을 구성하며, 국세와 지방자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자산양도 소득을 포함한 개인이 취하는 자산소득은 세계개혁 이전까지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되는 국세와 지방자치세의 과세대상이었으나, 세계개혁 후에는 근로소득과 분리되어 국세만이 30%의 비례세로 부과되고 있다. 법인소득은 국세 과세대상으로 법인이 취득한 소득에 30%의 비례세가 적용된다. 이 법인 소득세는 자산양도소득과 자산소득을 포함한 법인이 취하는 모든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이중과세에 대한 경감조치가 없기 때문에 배당금과 자산양도소득은 주주 개인의 자산소득으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다.

지방자치세는 과세표준인 근로소득에 비례세로 부과되며, 과세표준은 중앙정부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과 같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과세표준에 대한 전망과 지출계획에 따라 세율을 결정하며, 따라서 소득세율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다. 1992년의 경우 최저 26.50%에서 최고 33.48%로 나타났으며 평균 31.12% 수준이었다.

### 3. 독일의 지방소득세제

독일에서는 1969년에 공동세(Gemeinschaftssteuer)라는 독자적인 세목을 두어 그 과세권을 연방과 주가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sup>3)</sup>. 소득세를 비롯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세목들이 이 공동세의 범주에 속하며, 세수는 연방과 주가 공유하여 양자간에 배분된다. 공동세의 세수는 독일 전체 세수의 약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세수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에 독일의 기본법 제 106조 제3항에 따라 절반씩 배분하되,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기본법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합의하에 배분비율을 조정하고 있다. 1996년 현재 배분비율은 <표 3>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연방 56%, 주 44%이다. 공동세의 전체 주정부(Länder) 몫의 주정부간 배분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에 징세지원칙에 따른 세수이전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소득세는 거주지원칙이, 법인세는 기업소재지 원칙이 적용된다. 한편 부가가치세의 75%는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배분되고 나머지 25%는 재정능력에 따라 배분되는 교부금 형식을 취하고 있다.

공동세는 기본적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그리고 주정부간의 수직적·수평적인 자원분배를 규정하는 협동적 연방주의(cooperative federalism)를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소득세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도 전체 소득세수의 15%를 배분하는 반면 기초자치단체의 세원인 영업세(business tax) 세수의 15%를 7.5%씩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각각 배분하고 있다.

### IV. 지방소득세제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각 나라의 세원배분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포함하여 정부기능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가, 그리고 과세권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가에 따라 매우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득세원이 중앙정부(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간에 배분되는 유형을 미국형, 스웨덴형, 그리고 독일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물론 <표 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영국, 아일랜드, 뉴질랜드, 그리스, 네덜란드 등에서는 지방정부 수준에서

독일의 공동세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그리고 주정부간의 수직적·수평적인 자원분배를 규정하는 협동적 연방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3)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입법은 연방정부가 행하고, 행정은 주정부가 담당한다.

지방정부 수준에서 전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도 있으나 최근 많은 나라에서 소득세원을 지방정부가 활용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표 3〉 독일 공동세 배분기준(1996년)

(단위: %)

	연 방 정 부	주 정 부	기초자치단체
소 득 세 (근로소득세 포함)	42.5	42.5	15.0
법 인 세	50.0	50.0	
부 가 가 치 세	56(65.5) <sup>b</sup>	44(34.5)	

주: 1991년 전체세수는 원화로 환산하여 331조원이며, 이 중 소득세는 31조 9천억원, 근로소득세는 107조 5백억원, 법인세는 15조 8천억원, 부가가치세는 89조 8천억원으로 각각 전체 세수의 9.6%, 32.4%, 4.8% 및 27.1%를 차지함(1마르크=500원, 1991년 12월 31일 기준).  
 1) 부가가치세의 ( ) 안의 숫자는 통일 전의 배분비율.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G7의 세제』, 1994. 3.  
 박용주, 『독일의 공동세제도와 주민수평교부금제도의 특성과 시사점』, 1996.


전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많은 나라에서 1975년에 비해 소득세원을 지방정부가 활용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과 같이 주정부 수준에서 소득세를 부과하되 과세표준은 연방정부의 그것을 기본으로 활용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인 시정부 수준에서도 소득세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임을 지적하였다. 1993년 기준으로 연방정부는 80% 정도의 소득세를 부과하며 주정부가 18% 수준, 기초자치단체가 2% 수준으로 배분하여 부과하고 있다. 일본도 미국과 비슷한 형태이나 독자적인 세목으로 도부현민세와 시정촌민세가 있으며 각각 균등할, 소득할, 이자할에 대한 과세권과 징수권을 보유하고 국세인 소득세가 65%, 도부현이 12%, 시정촌이 23%를 배분하고 있다.

한편 스웨덴은 지방정부의 대부분의 세원(99.6%)을 소득세인 지방자치세에 의존하고 있으나 지방정부는 징수권을 갖지 않고 다만 세율결정권만을 보유하고 있다. 소득세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배분비율은 1993년 현재 17 대 83의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독일은 독특한 제도로 주정부간의 경제력 격차를 최소화하는 수직적·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의 일환으로 공동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소득세의 경우 연방정부 40%, 주정부 40%, 기초자치단체 20% 수준으로 배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개인소득세의 경우는

42.5 대 42.5 대 15로 배분되나 기초자치단체의 영업세를 포함하는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몫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방세이면서 소득과세로 구분되는 세목으로 주민세 소득할과 농지세 그리고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꼽아진다. 우리나라의 세원배분은 엄격한 세원분리방식을 고수하되 주민세만 예외적인데,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지방세인 농지세액의 10%를 주민세로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별로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는 시세, 도의 경우는 시·군세로 되어 있다. 1995년 징수실적 기준으로 주민세 징수액이 1조 7,014억원, 농지세가 21억원, 사업소세가 2,961억원으로 지방소득과세는 도합 1조 9,996억원 규모이다<sup>4)</sup>. 반면 국세인 소득세는 13조 6,182억원, 법인세가 8조 6,626억원 규모로 소득과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중은 8.24%에 불과하다.

요컨대 우리나라 지방세도 재산과세에 지나치게 의존하여(70% 정도) 지방세원의 신장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따라서 지방재정의 자주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으로의 정부기능 이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므로 소득과 소비과세의 비중을 늘려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특히 본고의 주제인 지방소득세제의 확충이 긴요한바, 이를 위해서는 농지세와 같은 분류소득의 확충보다는 종합소득세제의 포괄화라는 국가 전체적인 조세정책의 방향과 일치하는 주민세의 확충이 우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해 한시적으로 주민세율을 7.5%에서 10%로 인상하였으나 장기적으로 중앙정부의 기능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것에 대비하여 표준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및 단력세율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는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의 개선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자주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소득세제를 확충해야 하며 특히 주민세의 확충이 긴요하다.

4) 엄밀하게 말하면 주민세의 균등할 및 사업소세의 재산할은 소득과세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비중이 각각 전체 주민세 및 사업소세의 5%, 20% 내외이므로 대략적으로 계산할 때 이들 세목은 소득과세로 분류한다.



〈표 4〉 주·지방정부 세수입의 주요 세원별 구성(연방형 국가)

(단위 : %)

	소득세			급여소득세			재산세			일반소비세			개별소비세			수익자부담세			기타 <sup>1)</sup>		
	1975	1985	1993	1975	1985	1993	1975	1985	1993	1975	1985	1993	1975	1985	1993	1975	1985	1993	1975	1985	1993
호주																					
주	-	-	-	35.3	31.3	24.0	26.6	25.7	31.5	-	-	-	16.1	16.6	16.1	22.0	26.4	28.5	-	-	-
지방	-	-	-	-	-	-	100.0	99.6	99.5	-	-	-	-	-	-	-	0.4	0.5	-	-	-
오스트리아																					
주	44.2	52.9	50.5	-	4.6	-	1.8	1.0	0.9	33.9	29.7	34.5	13.5	5.1	5.6	4.4	3.8	4.3	2.2	2.8	4.3
지방	38.9	39.4	40.9	11.5	11.0	11.3	11.2	10.1	9.6	19.7	22.7	20.5	14.1	10.7	9.6	1.0	1.5	2.0	3.7	4.5	6.1
캐나다																					
주	43.6	44.9	50.4	-	-	-	2.3	4.0	5.9	19.6	20.3	22.9	16.8	15.5	14.8	17.8	15.4	6.0	-	-	-
지방	-	-	-	-	-	-	88.3	84.8	85.1	0.2	0.2	0.2	0.2	0.2	-	2.1	1.3	1.2	9.2	13.6	13.5
독일 <sup>2)</sup>																					
주	62.8	62.9	56.6	-	-	-	6.2	5.4	6.0	21.8	24.8	30.2	2.8	2.1	1.9	6.4	4.8	5.3	-	-	-
지방	69.4	80.9	81.1	9.0	-	-	20.3	18.1	17.8	-	-	-	0.5	0.4	0.5	0.4	0.4	0.3	0.4	0.2	0.3
스위스																					
주	77.7	76.9	77.6	-	-	-	14.3	15.5	15.4	-	-	-	1.5	1.3	1.0	6.4	6.4	5.9	-	-	-
지방	86.5	87.1	86.9	-	-	-	13.2	12.6	12.7	-	-	-	0.2	0.2	0.4	0.1	0.1	0.1	-	-	-
미국																					
주	31.6	37.7	38.6	-	-	-	4.1	3.7	3.9	30.8	32.3	32.5	23.6	16.7	16.9	10.0	9.7	8.0	-	-	-
지방	4.3	5.6	5.7	-	-	-	81.9	74.2	75.4	7.1	10.9	10.2	3.6	4.7	4.6	3.1	4.3	4.2	-	-	-
비가중치 평균																					
주	43.3	45.9	45.6	5.9	6.0	4.0	9.2	9.2	10.6	17.7	17.8	20.0	12.4	9.6	9.4	11.2	11.1	9.7	0.4	0.5	0.7
지방	33.2	35.6	35.8	3.4	1.8	1.9	52.5	49.9	50.0	4.5	5.6	5.1	3.1	2.7	2.5	1.1	1.3	1.4	2.2	3.1	3.3

주: 1) 주·지방정부에 속하는 사회보장기금(오스트리아)과 사업상 발생하는 잉여세 포함(오스트리아·캐나다·독일).

2) 유럽연합에 대한 납부금은 제외됨.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of OECD Member Countries 1965~1994, 1995.

〈표 5〉 지방정부 세수입의 주요 세원별 구성(단일형 국가)

(단위 : %)

	소득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재산세			일반소비세			개별소비세			수익자부담세			기타 <sup>1)</sup>		
	1975	1985	1993	1975	1985	1993	1975	1985	1993	1975	1985	1993	1975	1985	1993	1975	1985	1993	1975	1985	1993	1975	1985	1993
벨기에 <sup>2)</sup>	72.9	76.1	72.6	60.6	64.0	58.2	12.3	12.0	14.4	-	-	-	-	-	-	20.4	17.0	21.8	6.8	6.9	5.6			
덴마크	86.4	93.5	92.1	84.8	90.9	90.6	1.6	2.5	1.5	13.2	6.4	7.8	-	-	-	0.2	0.1	0.1	0.1	-	-	-	-	-
핀란드	99.8	99.0	95.2	91.5	90.5	88.9	8.3	8.5	6.3	-	1.0	4.7	-	-	-	0.1	-	-	0.1	0.1	0.1	-	-	-
프랑스 <sup>2)</sup>	23.0	15.5	13.2	23.0	15.5	13.2	-	-	-	23.1	31.7	34.0	-	-	-	4.8	5.1	5.0	3.2	8.0	7.2	46.0	39.7	40.6
그리스 <sup>2)</sup>	16.5	9.5	-	11.0	9.5	-	-	-	-	6.6	9.5	-	9.0	2.5	4.3	32.9	26.3	20.4	18.7	11.4	27.6	16.3	40.8	47.7
아이슬란드	65.1	63.5	76.8	62.0	55.3	74.5	3.1	8.2	2.3	15.3	15.3	17.3	-	-	-	7.9	5.5	5.9	-	-	-	11.7	15.7	-
아일랜드 <sup>2)</sup>	-	-	-	-	-	-	-	-	-	100.0	100.0	100.0	-	-	-	-	-	-	-	-	-	-	-	-
이탈리아 <sup>2)</sup>	80.0	66.7	30.1	48.0	16.0	2.4	32.0	10.7	1.6	17.5	-	23.0	-	-	-	-	10.2	8.8	2.5	0.3	19.7	-	22.7	18.5
일본	54.8	58.0	57.5	26.3	28.9	33.8	28.5	29.2	23.8	24.9	23.7	28.3	-	-	-	15.1	12.4	8.4	4.9	4.8	4.7	0.2	1.0	1.1
룩셈부르크 <sup>2)</sup>	76.7	84.1	94.0	37.2	-	-	39.5	84.1	94.0	4.9	7.3	5.5	9.0	-	9.0	0.2	0.4	0.4	1.1	-	-	8.0	8.2	-
네덜란드 <sup>2)</sup>	15.4	-	-	15.4	-	-	-	-	-	54.2	75.1	67.1	-	-	-	2.7	1.1	1.4	27.7	23.8	31.4	-	-	0.2
뉴질랜드	-	-	-	-	-	-	-	-	-	89.1	93.3	92.9	-	-	-	6.7	1.8	1.2	4.2	4.8	5.9	-	-	-
노르웨이	91.9	90.2	87.9	86.3	83.4	81.4	5.7	6.8	6.6	5.2	6.4	8.8	-	-	-	-	-	-	-	0.5	0.6	2.9	2.9	2.6
포르투갈	-	63.7	23.2	-	11.2	-	-	11.7	50.0	1.6	38.0	-	9.2	18.6	-	20.2	16.5	50.0	4.3	3.6	-	1.0	0.2	-
스페인	57.3	26.9	17.1	43.0	14.4	13.7	-	2.5	3.3	8.5	16.8	36.4	31.0	31.7	12.2	3.2	15.7	13.2	-	5.5	17.4	-	3.5	3.8
스웨덴	99.6	99.7	99.6	91.5	98.3	99.6	8.2	1.4	-	-	-	-	-	-	-	0.3	0.2	0.4	0.1	0.1	-	-	-	-
터키	-	42.3	46.6	-	30.6	39.6	-	11.8	7.1	-	5.3	3.1	-	25.6	35.2	-	12.7	10.4	-	0.4	0.8	13.6	3.8	-
영국 <sup>2)</sup>	-	-	-	-	-	-	-	-	-	100.0	100.0	76.7	-	-	-	-	-	-	-	-	-	-	-	23.3
비가중치 평균	49.4	49.4	44.8	40.0	35.1	33.7	8.2	10.4	9.6	30.1	27.4	30.2	2.9	3.8	3.9	4.4	6.2	5.1	7.8	4.5	7.8	5.4	8.7	8.2
한국	-	-	11.6	-	-	6.2	-	-	5.4	-	-	68.3	-	-	-	-	-	16.9	-	-	1.7	-	-	1.3

2000 연국의 지방소득세

주: 1) 지방정부에 속하는 사회보장기금(벨기에), 순부유세(노르웨이), 상속세(핀란드·포르투갈)와 사업상 발생하는 잉여세(덴마크·프랑스·그리스·이탈리아·네덜란드·뉴질랜드·노르웨이) 포함.  
 2) 유럽연합에 대한 납부금은 제외됨.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of OECD Member Countries 1965~1994, 1995.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1994.

#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방지 - OECD의 논의 및 회원국의 관련제도 현황 -

안 종 석/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은 국가간의 거래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큰 반면 국제협력 없이는 근절되기 어렵다.

## I. 서론

공공부문의 부패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며 경제적으로는 국제무역과 투자에 왜곡을 초래하여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 OECD 회원국들은 1990년대 초부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국내 부패와 국제적 부패를 불문하고 모든 공공부문의 부패를 근절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최근에는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방지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국 공무원의 부패 또는 자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법률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제재하는 조치는 전반적으로 미미하기 때문이다.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은 국제무역과 투자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반면 국제적인 협력 없이는 근절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공동 대처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데 모든 회원국이 동의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77년에 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Act)을 제정하여 자국 기업의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 다른 국가들에서는 이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 미국 기업이 해외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판단하에 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방지를 위한 OECD의 노력과 회원국의 관련제도 현황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OECD의 논의가 진행되어 온 과정과 주요 논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각각의 논점에 대한 논의전개 현황과 회원국의 관련제도를 검토한다.

OECD 이사회는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방지를 위하여 구체적이며 실효성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회원국들에게 권고했다.

## II. 추진과정

1990년에 OECD 각료이사회(이하 '이사회')는 국내 및 국제적 수준에서의 불법적 지불행위(illicit payment)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위원회(CIME: Committee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에 요청하였으며, 이 요청에 따라 CIME는 4년간의 검토를 거친 후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의 뇌물제공에 대한 권고(안)'를 이사회에 상정하였다. 이사회는 1994년 5월 이 권고안(이하 '뇌물제공에 대한 권고')을 채택하였다<sup>1)</sup>.

뇌물제공에 대한 권고를 통해서 이사회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개시하기 위하여 외국 공무원에게 법적으로 허용된 수준을 능가하는 부당한 금전적 또는 다른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뇌물이라고 정의하고, 회원국에게 국내법을 검토하여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의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여기서 국내법이란 형법상의 조치 및 관련제도, 민법, 상법, 행정법, 세법, 기업회계 관련규정, 정부조달 및 보조금 관련규정 등 모든 국내 관련법과 조치들을 포괄한다.

이 권고는 또한 국제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정보교환, 증거제공, 범인 인도 등의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이러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간 협약이나 조약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체결, 국내법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

1)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C(94) 75/FINAL, 1994.

OECD 이사회는  
법인세 부과시  
외국 공무원에게  
제공한 뇌물의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다른 국제 기관과 협조하여 보조를 맞추어 나갈 것  
과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의 뇌물제공에 대한 실무작업반을 만들어서 이 권고의  
제도화를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회원국의 제도 개선에 대해 상담하는 포럼  
을 제공하며, 추진 상황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CIME에 요청하였다.

그 후 이 권고의 후속조치로 CIME 산하에 뇌물방지작업반(Working  
Group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이 설치되었  
으며, 이 작업반을 중심으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방지를 위한 논의  
가 진행되고 있다. CIME는 또한 재정위원회(CFA: Committee on Fiscal  
Affairs)에 조세상의 조치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으며, CFA는 그 요청을 받  
아들여 회원국의 제도를 조사하고 가능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외국 공무  
원에게 제공한 뇌물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권고(안)'를 이사회에 상정하였다.  
이사회는 1996년 4월 CFA가 제안한 권고안(이하 '뇌물의 손금불산입에 대  
한 권고')을 가결하였다<sup>2)</sup>.

뇌물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권고에서 이사회는 외국 공무원에게 제공한 뇌물  
의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는 회원국들에게 손금불산입을 위한 법 개정을 적  
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CFA에게는 CIME와 협력하여 이 권고  
의 제도화 여부를 감시하고 비회원국과의 접촉을 통해 OECD의 노력에 동참  
할 것을 권장하며 적절한 시기에 추진상황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  
하였다.

또한 1996년 이사회는 뇌물방지작업반에게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형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형사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적 공조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그 결과를 1997년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추진되어 온 OECD의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  
공방지를 위한 공동 노력은 아직 많은 분야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현  
재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분야는 조세상의 조치, 형사처벌, 회계기준, 정  
부조달 등 4개의 분야이다. 조세상의 조치에 대해서는 외국 공무원에게 제공  
한 뇌물의 손금불산입과 세무관련 정보의 교환 문제가 주로 논의되었는데, 뇌  
물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권고를 통해서 대체적인 윤곽이 잡혔다고 할 수 있  
다.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국내법의 개정, 국제적 협력방안 등에 대해 다각  
적으로 검토가 진행중이다. 회계기준에 대해서는 회계기준의 강화, 뇌물방지

2)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the Tax Deductibility of Bribes to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C/M(96)8/PROV, 1996.

에 있어서 외부감사의 역할 등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으며, 정부조달과 관련해서는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기업의 정부조달에 대한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뇌물제공을 방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뇌물의 손금불산입이 형사처벌과 함께 뇌물 제공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국제적 합의의 강한 의지표명이라는 점에 회원국들간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 Ⅲ. OECD의 논의와 회원국의 관련제도 현황

#### 1. 조세분야

뇌물과 관련된 조세상의 조치에 대해 검토를 의뢰받은 CFA는 외국 공무원에게 제공한 뇌물의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일부 회원국 대표들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반대 논리 중 대표적인 것은 수평적 형평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경비의 지출과 이익의 실현간에 뚜렷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나 비용의 지출이 과도한 경우 또는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상 필요한 모든 경비의 손금산입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업상 꼭 필요한 경비라고 인정되는 경우 뇌물도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일부 회원국은 뇌물제공에 대한 정보입수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커미션과 불법적인 뇌물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무조사에 있어서 난점이 많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외국 공무원에게 제공한 뇌물을 손금불산입하는 조치가 실제로 뇌물제공을 어느 정도나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도 표명되었다<sup>3)</sup>.

이러한 반대 의견을 모두 검토한 후 CFA는 외국 공무원에게 제공한 뇌물의 손금불산입 조치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뇌물의 손금불산입이 형사처벌과 함께 뇌물제공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국제적 합의의 강한 의지표명이라는 점에 회원국들간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뇌물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권고는 회원국들에게 조세상의 조치를 점검하고 외국 공무원에게 제공한 뇌물의 손금산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권고의 후속조치로 CFA는 이 권고의 제도화에 대한 감시방안을 마련하

3) OECD,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e Role of Taxation," DAFNE/INV/IME(96)9, 1996.

우리나라의 경우 뇌물을 수수한 외국 공무원의 거주지국에서 뇌물 수수행위가 불법으로 판단되면 손금불산입한다.

여 검토중인데 그 초안에 따르면, 아직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하고,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국가나 검토가 완료된 국가, 검토 후 개정조치가 완료된 국가들은 각각 그 과정을 보고하며, 이미 손금산입을 불허하고 있는 국가들은 행정절차, 입법과정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CFA는 1차 점검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 후 지속적으로 감시제도를 운영한다<sup>4)</sup>.

회원국의 관련제도를 보면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뇌물은 이를 제공받은 자의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뇌물이 정부에 몰수된 경우에는 그 뇌물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오스트리아·벨기에·캐나다·독일·프랑스·룩셈부르크에서는 몰수된 뇌물도 과세대상이 된다.

뇌물을 제공한 자에 대한 과세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내 공무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또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외국 공무원에게 제공한 뇌물도 손금불산입된다(〈표 1〉 참조). 미국과 영국에서는 외국 공무원에게 제공한 불법적인 뇌물의 손금산입이 금지되고 있고<sup>5)</sup>, 캐나다에서는 뇌물을 수수한 외국 공무원의 거주지국에서 불법인 경우에 한하여, 덴마크·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에서는 뇌물을 받은 자의 거주지국 상관행에 위배되는 경우에 뇌물이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그 중 노르웨이에서는 자국 및 수혜자 거주지국의 일반적인 상거래상의 윤리 및 행정관행의 위반을 포함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지불의 손금산입을 불허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 법안은 1997년 봄에 국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sup>6)</sup>. 또한 스위스와 덴마크, 호주에서도 외국 공무원에게 제공한 뇌물의 손금산입을 금지하기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sup>7)</sup>. 이 외에 일본에서는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이 접대비(entertainment expenses)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되며, 이탈리아에서도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이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호주·뉴질랜드·스페인·스위스의 경우에는 뇌물 수혜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경우에 뇌물의 손금산입이 허용되며, 프랑스·오스트리아에서는 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뇌물의 손금산입이 가능하다<sup>8)</sup>. 독일과 포르투갈에서는 뇌물 수혜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뇌물이 이익의 실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 손금산입이 허용되며,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뇌물이 사업상 필요한 실질적인 지출이라는 조건하에서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4) OECD, "Suggested Procedures for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uncil's Recommendation on the Tax Deductibility of Bribes to Foreign Public Officials," DAFFE/CFA/WP8 (96)9, 1996.

5) 자국 내에서 불법으로 규정되는 경우.

6) OECD, "Recent Legislative Developments on the Deductibility of Bribes to Foreign Public Officials," DAFFE/CFA/WP8/WD(96)19, 1996.

7) *The Wall Street Journal*, January 2, 1997.

8)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경우 세무당국은 조사과정에서 뇌물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관련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뇌물의 손금산입이 거부된다.

〈표 1〉 외국 공무원에게 제공한 뇌물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OECD 회원국의 제도

정상적인 조세규정상 손금산입	수혜자가 누구인지 입증되지 않아도 손금산입 <sup>1)</sup>	오스트리아, 프랑스
	수혜자가 누구인지 입증되는 경우 손금산입	호주, 독일 <sup>2)</sup> , 뉴질랜드, 포르투갈 <sup>2)</sup> 스페인, 스위스
	특정 조건하에서 손금불산입 무조건 손금불산입	벨기에 <sup>3)</sup> , 독일 <sup>2)</sup> , 포르투갈 <sup>2)</sup> , 네덜란드 <sup>4)</sup> 이탈리아 <sup>5)</sup> , 일본 <sup>6)</sup>
뇌물이 불법인 경우에 손금불산입	제공자의 거주지국에서 불법인 경우	영국, 미국
	수혜자의 거주지국에서 불법인 경우	캐나다 <sup>7)</sup> , 덴마크 <sup>8)</sup> , 핀란드 <sup>8)</sup> , 노르웨이 <sup>8),9)</sup> 스웨덴 <sup>8)</sup>

외국 공무원에게 제공한  
뇌물과 관련한  
또 하나의 조세 이슈는  
관련 정보의  
국내 유관기관 또는  
다른 국가와의  
교류 문제이다.

- 주: 1) 세무당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혜자의 신분에 대한 정보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데, 납세자가 이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2) 포르투갈과 독일에서는 단순히 사업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뇌물은 선물로 간주하여 손금불산입.  
3) 법률로 정한 특정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또는 특별한 과세대상이 됨).  
4) 사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출이라는 증거가 없는 경우 손금불산입.  
5) 손금산입을 위한 특별한 규정이 없음.  
6) 접대비로 간주하여 손금불산입.  
7)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계획이 캐나다에서 이루어진 경우.  
8) 수혜자의 거주지국에서 뇌물수수가 관행인 경우 손금산입.  
9) 손금불산입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중임.

자료: OECD, "Summary of Country Practices on Allowing the Tax Deductibility of Bribes Made to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DAFPE/CFA/WP8/WD(96)24, 1996.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조세법에는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과 관련된 명문조항이 없다. 단, 법인세법 제18조의 2에 접대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뇌물을 수수한 외국 공무원의 거주지국에서 뇌물수수행위가 불법행위로 판정되면 그 뇌물은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경비로 간주하여 손금불산입한다.

조세문제와 관련된 또 하나의 이슈는 관련 정보의 국내 유관기관 또는 다른 국가와의 교류 문제이다. 뇌물관련 세무정보의 국제적 교류 방법은 세무당국이 보유한 정보를 국내 사법기관에 제공하고 그 정보를 다른 국가의 사법기관과 공유하는 방법과 서로 다른 국가의 세무당국간 정보를 교환하고 다른 국가의 세무당국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세무당국이 그 정보를 국내 사법기관과 공유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세무당국과 사법기관

뇌물과 관련된  
세무정보의 국제적  
교류 및 사법기관과의  
공유를 위해서는  
국제협약을 따로  
체결하거나 조세조약을  
개정해야 된다.

〈표 2〉 세무당국이 보유한 뇌물관련 정보의 사법기관과의 공유에 대한 OECD 회원국의 제도

자발적인 정보제공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가
사법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정보 제공	가능	벨기에, 덴마크, 이탈리아(원칙적으로 가능)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미국
	일반적으로 불가 <sup>1)</sup>	호주, 오스트리아, 스위스
	불가	아일랜드 <sup>2)</sup> , 영국

주: 1) 예외적인 경우 가능.

2)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임.

자료: OECD,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e Role of Taxation," DAFFE/INV/IME(96)9, 1996.

간의 정보의 교류를 요구하는데 세무당국이 개별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사법부 또는 검찰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불법행위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아직 많은 국가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회원국들의 관련제도를 보면 미국의 경우 세무당국이 자발적으로 사법부 또는 검찰에 뇌물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그 외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발적인 정보제공이 불가능하다(〈표 2〉 참조). 벨기에,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미국에서는 사법부 또는 검찰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세무당국이 뇌물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아일랜드와 영국의 세무당국은 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더라도 뇌물관련 세무정보를 사법기관에 제공할 수 없으며, 호주·스위스·오스트리아의 경우에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한 국가의 세무당국이 다른 국가의 세무당국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국내의 다른 부처와 공유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서로 다른 국가의 세무당국간 세무정보 교환은 일반적으로 양자간 조세조약에 따라 시행되는데, 양자간 조세조약의 모델인 OECD 모델조약에 따르면 세무당국간의 세무관련 정보 교환은 조세조약이 다루고 있는 조세에 대한 정보에 한하여야 하며, 그 정보도 조세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뇌물과 관련된 세무정보의 국제적 교류 및 사법기관과의 공유를

위해서는 조세조약과는 독립된, 뇌물관련 정보의 교환을 다루는 국제협약을 따로 체결하거나 조세조약을 개정하여 뇌물관련 정보에 대하여 사법기관과의 공유를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첫번째 방법은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두번째 방법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 납부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CFA와 CIME의 작업반에서는 앞으로 국제조세조약 및 다른 국제협약의 상호 정보교환 조항을 통해서 불법적인 뇌물제공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형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근절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다.

## 2. 형사처벌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을 형사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근절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CFA는 뇌물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권고에서 형사처벌이 뇌물의 손금불산입을 위한 회원국의 조세제도 개편을 촉진할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또한 뇌물제공자의 정부조달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데에도 형법상의 불법화가 중요한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CIME의 실무작업반은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행위의 형사처벌 규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문제들, 국내법상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방안, 형사처벌의 제도화를 위한 다자간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여 왔다.

형사처벌 규정의 제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은 불법행위의 정의, 제공자 및 수혜자의 정의, 관할권의 문제, 기타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sup>9)</sup>. 1994년 권고에 따르면 ① 국제 상거래에 관련될 것 ② 외국 공무원이 수혜자일 것 ③ 외국 공무원이 법적인 의무를 위반했을 것 등이 불법적 뇌물을 정의하는 요소가 된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사업상의 지출'이라는 단서 조항과 '외국 공무원의 법적인 의무 위반' 조건이 포함될 경우 실질적인 조사가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제공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포함여부가 이슈로 되고 있다. 법인은 일반적으로 형사법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사회적·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는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수혜자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뇌물을 수수한 외국 공

9) OECD, "Criminalisation of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Preliminary Results Discussions Among Experts," DAFFE/IME/BR(96)10, 1996.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과 관련된 돈세탁이 불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무원 거주지국의 정의에 따르는 방법, 별도로 정한 법률 또는 국제적 협약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관할권은 자국 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만을 기소할 수 있는 발생지주의(territorial approach)와 자국 국적 보유자 또는 자국 거주자가 외국에서 행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기소가 가능한 국적주의(nationality approach)가 있는데 현재 모든 회원국에서 발생지주의를 따르고 있다. 국적주의의 경우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자국 국민이 다른 국가의 기업을 위해서 일한 경우에 적용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기타 관련된 이슈로는 회계기준과 돈세탁 관련조항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돈세탁과 관련해서는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과 관련된 돈세탁이 불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즉 돈세탁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전제조건에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및 뇌물수수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법상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의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방법으로 네 가지가 제시되었는데, 그 중 첫번째는 일반적인 부패방지 또는 뇌물방지 조항과는 독립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방지 조항을 만들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의 형사처벌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하기 위해 미국의 우편이나 다른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FCPA가 이에 속한다. 이 경우에는 수혜 공무원의 위법행위, 위법행위의 목적 등 범죄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제공자의 정의, 수혜자의 정의 등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이러한 접근방법을 사용한 경우는 아직 없다.

두번째 방법은 일반적인 부패방지 또는 뇌물방지법을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의 경우에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일반적인 부패방지법이 대리인의 위법에도 적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적용범위를 갖고 있는 경우에 가능한데 영국의 PCA(Prevention of Corruption Act)가 그 예이다. 이 법은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며 전통적으로 그렇게 사용된 것도 아니므로 제도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특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세번째 방법은 자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의 형사처벌조항을 외국 공무원에게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이며, 네번째 방법은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스위스의 경우, 불공정경쟁법은 종업원, 대리인, 또는 제3자에게 의무를 위반할 것을 종용하기 위하여 금품 또는 다른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제3자에는 외국 공무원도 포함된다.

형사처벌과 관련된 회원국의 제도를 보면 모든 회원국에서 자국 국민에 대한 뇌물제공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불법이라고 명문화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뿐이다. 캐나다·그리스·멕시코·네덜란드·뉴질랜드·스웨덴·터키·영국에서는 일반적인 뇌물방지 또는 부패방지법을 확대적용하여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처벌할 수 있으나, 다른 국가에서는 다른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오스트리아·핀란드·프랑스·독일·이탈리아·노르웨이·스위스에서는 공정거래법 등 형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적용하여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자를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호주·벨기에·덴마크·일본·포르투갈·스페인에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sup>10)</sup>.

우리나라의 형법에는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과 관련된 명문규정이 없다. 형법 제129조~제135조는 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의 공무원에는 외국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인 뇌물방지규정을 적용하여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즉 외국 공무원을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죄(背任收財罪)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대리인)로 보아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행위를 형법 제357조 제2항 배임증재죄(背任贈財罪)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뇌물수수 장소가 우리나라가 아니면 뇌물을 수수한 외국 공무원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

뇌물방지작업반은 최근 형사처벌의 제도화를 위한 공조방안을 검토하여 네 가지 공조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제1안은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이다<sup>11)</sup>. 최근 반테러조약, 마약거래에 관한 조약, 돈세탁 관련조약 등 특정한 행위의 형사처벌을 위한 다자간 협약(이하 '형사처벌조약')이 증가하고 있는데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에 관한 조약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모든 회원국에서 자국 국민에 대한 뇌물제공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명문화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뿐이다.

10) OECD, "Review of the Recommendation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DAFFE/IME/BR(95)9/REV1, 1995.

11) OECD, "Possible Instruments to Coordinate National Measures to Criminalise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DAFFE/IME/BR(97)1, 1997.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방지를 위한 공조방안으로 별도의 조약 체결방안, 이사회의 권고 또는 의결을 통한 협력방안, 이사회의 권고와 의결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 있을 것이다. 형사처벌조약은 계약국들에게 특정행위를 국내법상 범죄로 규정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인데,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국제적으로 통일된 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비회원국의 참여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법 개정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제도의 유연성(flexibility)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조항 마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 또한 있다. 국제적 합의 과정에서 최소한의 공통분모에 대해서만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으며, 협상, 계약국 내에서의 승인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문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감시제도를 동반하지 않는다는 것도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2안은 OECD가 국내법상 형사처벌 조항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방안이다. OECD는 지금까지 회원국들에게 수많은 권고를 해왔으며, OECD의 권고는 감시 또는 권고의 제도화를 촉진하는 다른 후속활동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권고에서는 형사처벌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회원국은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회원국간에 쉽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필요한 법률의 제정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지 않거나, 각국이 취한 조시간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도 있다.

제3안은 이사회에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을 의결하는 방안이다. 이사회의 의결은 구속력이 있다. OECD의 규정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제재조항은 없으나, 의결의 위반은 국제적인 약속의 위반이므로 상호견제 또는 국제 분쟁의 해결을 위한 다른 수단들을 통해 제재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결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국내법의 개편을 요하는 내용의 의결을 할 때에는 광범위한 유보를 허용하거나, '회원국은 ...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의결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권고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내용을 담는 데는 이사회 의결이 다자간 협약보다 유리하다. 그러나 많은 회원국들에게 신속하고, 대폭적이며, 일률적인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는 의결은 아직 없었으며, 사적 행위의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의결도 없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제4안은 OECD의 권고와 후속조치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결합하는 방안이다. 이는 형사처벌의 제도화에 대해 이사회가 권고하고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

는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방안으로서 권고안의 해석, 제도화 등에 대해 OECD 부속기구(예:뇌물방지작업반) 또는 회원국 대표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Participants Group)의 감독을 받도록 할 수 있다.

### 3. 회계제도

모든 회원국들이 기업의 회계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자산의 거래나 처분 등에 대해 정확한 회계기록을 하여야 하며 직·간접적으로 회계장부를 위·변조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비밀장부 또는 장부의 거래의 금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sup>12)</sup>.

영국의 경우 매일 매일 금전의 수령과 지출 내역을 기록·정리하여야 하며 무엇을 위해서 지불·수령하였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거래가 발생하였는지 기록하여야 한다. 이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탈리아에서는 비거주자에게 중재비용을 지불할 경우 공인된 중재기관(예:은행)을 거쳐야 화폐를 교환할 수 있으며, 이때 중재비용이 거래당사국의 상거래 관행과 부합하며, 주거래(main transaction)에 필요한 것이라는 등의 증빙자료가 갖추어져야 한다. 노르웨이에서는 모든 현금 및 다른 통화수단의 국제 거래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외환을 취급하는 은행은 외환거래에 대해 중앙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에는 뇌물방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접대비와 수주비(건설업)가 뇌물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현행 기준만 가지고는 뇌물제공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하다.

또한 외부감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사 및 감사도중 알게 된 정보의 정부당국에 대한 통보의무에 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IFAC(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에 따르면 감사의 목적은 감사자로 하여금 기업의 회계기록이 회계보고기준에 맞게 되어 있는가를 보고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외부감사자는 불법적인 뇌물제공을 감시하고 그 정보를 정부에 제공할 의무를 갖고 있지 않다. 회원국들의 관련제도를 보면 프랑스, 이탈리아의 경우 감사자는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불법행위를 검찰에 보고해야 하며, 영국에서는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보고할 권리를 감사자에게 부여

외부감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사 및 감사도중 알게 된 정보의 당국에 대한 통보의무에 관해서도 논의가 진행중이다.

12)OECD, "Accounting Requirements, Internal Company Controls and Audit," DAFFE/IME/BR(96)7, 1996.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이 뇌물제공을 포함하는 범죄행위를 한 자의 정부 입찰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감사의 목적이 회계작성 기준에 맞도록 회계기록이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하는 데 국한되는 한 감사과정에서 불법적인 뇌물제공 여부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회계제도와 관련된 이상의 논의에서는 아직 뚜렷하게 합의된 결론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기업의 뇌물제공을 억제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이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외부감사자로 하여금 뇌물 제공 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할 것인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내부통제(internal control)와 관련해서도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더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4. 정부조달

정부조달은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방지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정부에 의한 공공조달 절차에서 공무원의 뇌물수수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입찰자격이 부패행위와 관련된 유인 또는 제재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조달제도 개선에 대한 OECD의 논의에서 첫번째 주제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 정부조달 절차의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회원국들은, 현재 WTO, World Bank, EU 등에서 보다 명확한 정부조달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OECD는 이러한 노력들을 지지하며 필요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두번째 주제는 부패에 대한 제재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유인으로 부패 행위자의 정부조달에 대한 참여자격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실무작업반에서 검토중이다<sup>13)</sup>. 현재 대부분의 회원국이 뇌물제공을 포함하는 범죄행위를 한 자의 정부 입찰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참여제한은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참여제한 기간은 5개월 이내(헝가리)에서 2년 이내(멕시코)까지 다양하고, 독일의 경우에는 제재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부수적인 벌칙으로는 멕시코·그리스·독일·헝가리·스페인의 경우 이미 맺은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으며, 영국의 경우 계약해지뿐만 아니라

13)OECD, "Corruption and Public Procurement: the Use of Access to Public Procurement as a Sanction for Corrupt Behavior," DAFFE/IME/BR(96)8/REV 1, 1996.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리스·헝가리의 경우에는 벌금이 추가될 수 있다.

이러한 뇌물제공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의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국가는 그리스·스웨덴·멕시코·독일·스페인·미국 등이며,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이 외국에서 불법으로 인정된 경우, 이에 대해 고려하는 국가는 독일·영국·그리스 등이다.

우리나라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뇌물제공자에 대한 입찰참가자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데, 뇌물제공자에게는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뇌물을 제공하여 시공을 부실하게 한 자에게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가해진다. 이 규정은 국내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조사한 회원국의 정부조달제도에 대한 정보는 불완전한 상태이므로 작업반은 앞으로 현행 제도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입수하고 분석하여,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자의 정부조달 참여를 제한하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IV. 요약

OECD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근절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국제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지 6년여의 세월이 지났다. 그 동안 이사회에서 회원국에 대한 2개의 권고안을 채택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보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의가 진행중이다.


가장 큰 가시적인 성과는 1994년에 이사회에서 채택한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의 뇌물제공에 대한 권고' 인데 이 권고는 뇌물제공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를 표명한 것으로서 선언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 또한 이 권고는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OECD의 구체적 논의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 권고에 의해서 조직된 뇌물방지작업반은 이 권고의 제도화를 위해 조세제도, 형사처벌, 회계제도, 정부조달의 4개 분야에 대한 회원국의 제도 및 다른 국제기관의 관련된 활동

OECD는 회원국의 정부조달제도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입수 분석하고 뇌물 제공자의 정부조달 참여를 제한하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접대비를 전액 손금불산입하는 것도 뇌물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권고에 응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규정 등을 조사한 후 이를 분석하여 뇌물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고, 이 대안들을 평가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진척을 보인 부문은 조세부문으로서 1996년에 '외국 공무원에게 제공한 뇌물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권고'가 채택되었으며, 최근에는 이 권고의 실행방안 초안이 마련되었다. 이 초안에 따르면 회원국은 관련된 제도의 현황 및 개편계획 또는 개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현재 노르웨이·스위스·덴마크·호주 등에서 이 권고에 따른 법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명문규정이 없이 국세청 해석을 통해서 뇌물을 수수한 외국 공무원의 거주지국에서 불법으로 판정될 경우 뇌물을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로 간주하여 손금불산입하는데,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명문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축소하는 데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데, 일본과 같이 접대비를 전액 손금불산입하는 것도 뇌물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권고에 응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sup>14)</sup>.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형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형사처벌하는 조치는 뇌물제공을 근절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추진하는 데에는 많은 기술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실무작업반은 회원국의 제도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 중이다. 회계제도와 정부조달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히 회원국의 제도를 조사·분석한 후에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14) 손원익, 「접대비 관련 세제의 개선방향」, 접대비 관련 세제의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한국조세연구원, 1997. 1.

# 개정 노동법의 쟁점과 과제

박 기 백/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I. 서론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기업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노동법을 개정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온 주요 요인으로 고용, 해고, 근로시간 등에 대한 후진적 노동 법규를 지목하고 이의 개정을 요구해 왔다. 즉 경직적 노동시장으로 인하여 기업이 경기 또는 업무량에 맞게 신속적으로 인력 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구조 조정이 저해되고 있으며, 인건비 부담이 증가되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특히 경상수지 적자가 급증하고 수출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된 원인이 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있다고 보고 서둘러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노동관계법의 개정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로 우리나라의 노동 관련 법규가 국제적 규범이나 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할 만큼 경제적 위상이 높아졌으므로 노동 법규도 국제적 규범에 맞게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할 만큼 경제적 위상이 높아졌으므로 노동 법규도 국제적 규범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노동법으로 인하여 노동자의 해고가 용이해진 점은 경기침체기라는 시기적 특수성과 맞물려 해고에 대한 불안 심리를 가중시키고 있다.

개정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1991년 가입),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1996년 가입)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단체로부터 노동법 개정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노동계 또한 노조 활동 및 노동 쟁의와 관련된 법률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의 개정을 요구해 왔다. 앞으로 WTO에서 무역과 노동 기준이 연계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노동관계법을 국제적 규범 수준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노동법 개정은 긍정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앞서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노동계는 개정 노동법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개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노동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부터 파업을 시작하였고 법안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전적으로 소외된 야당도 개정 노동법에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개정 노동법으로 인하여 노동자의 해고가 용이해진 점은 경기침체기라는 시기적 특수성과 맞물려 많은 사람들에게 해고에 대한 불안 심리를 가중시키고 있다.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1996년 4월 대통령이 신노사관계 구상을 발표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노사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하였다. 동 위원회는 노사관계와 관련된 제도 개혁의 필요성 및 개정 방향에 대해 노사 양측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어 복수노조, 정리해고제와 같은 핵심 쟁점 사안을 제외한 107개 항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합의안을 기초로 복수노조, 정리해고제와 같은 미합의 쟁점 사안을 포함한 노동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여당은 복수노조 허용을 3년간 유예하고 정리해고의 요건을 다소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개정 노동법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정치권이 합의함에 따라 개정된 노동법의 향방도 관심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렇게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한 개정 노동법을 주요 쟁점별로 정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 노동법의 쟁점은 무엇이고, 선진국의 경우는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 어떻게 개정되었나를 살펴본다. 나아가 개정 노동법이 경제주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도 생각해 본다.

## II. 주요 쟁점

### 1. 정리해고

해고는 통상해고와 정리해고로 구분할 수 있다. 통상해고가 근로자의 일신상 또는 행동상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 개인 단위로 해고하는 것을 뜻하는 반면 정리해고는 사용자측의 사유,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복수의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처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정리해고와 관련된 법적 규정이 없었다. 다만 대법원 판례가 가이드라인이 되어 정리해고가 드물게 시행되어 왔다.

사용자측에서는 정리해고가 지나치게 제한되면 경기변동에 대한 기업의 신속적 대응이 어렵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경영 합리화 및 구조조정이 제약되며, 한 부문에서 잉여 인력이 발생해도 다른 부문의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는 부작용이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도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저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측에서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기업간 이동이 자유로운 횡단적 구조가 아니며 실업보험제도가 정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리해고제에 반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중도 채용의 관행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 재취업이 쉽지 않으며, 재취업한다 하여도 고용 조건이 현저히 저하되는 현실을 문제삼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제가 1995년 7월부터 도입되었지만 실업 급여의 수준이 아직 낮은 편이고, 지급 대상도 30인 이상 고용 기업에 국한되어 있는 등 한계가 있어 정리해고될 경우 근로자의 생계가 불안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ILO는 ‘사용자에 의한 고용 해지에 관한 협약’ 등에서 정리해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정리해고와 관련된 규정은 없지만 경기변동과 같은 경영 여건의 변화시 기업이 일시해고(lay-off)를 통해 고용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시해고시 근속연수가 적은 사람이 먼저 해고 대상이 되는 선임권 원칙(seniority principle)이 견지되어 대상자 선정에 둘러싼 분쟁도 거의 없는 상태다. 일본은 정리해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태이지만 대법원 판례가 가이드라인이 되어 정리해고를 인정하는 추세다.

사용자측에서는 정리해고가 지나치게 제한되면 국가적 차원에서도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저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된 노동법에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노동법에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정되는 것으로는 경영의 악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과 기술혁신 및 업종의 전환을 들고 있다. 또한 정리해고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해고일 60일 전까지 당해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고를 막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에 관해서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정리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 참조: 대법원 판례(정리해고의 요건)

① 해고의 필요성

- 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기업의 도산을 초래할 정도의 경영 위기
- 생산성 향상, 경쟁력의 회복 또는 제고를 위한 작업 형태의 변경
- 신기술 도입과 같은 기술적 이유와 그로 인한 산업의 구조적 변화

② 해고 회피 노력 의무

- 경영방침이나 작업 방식의 합리화, 신규 채용의 금지, 일시 휴직 및 희망 퇴직의 활용, 자산 매각 등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③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정 기준

- 해고 대상자 선별시 근로자의 평소 근무 성적(결근 일수, 지각 횟수 등), 규율 위반 전력, 기업 공헌도, 경력, 기능의 숙련도, '30세 이하인 자'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적용

④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절차적 타당성)

- 고용조정에 관한 사용자와 조합간 협의나 약관이 있는 경우 협의 의무

## 2.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근로시간을 경영 여건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1주 44시간이며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1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주량의 급증, 계절적 주기적 업무량 증가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시간에 대해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반면 업무량이 축소하여 실제 업무시간이 단축되어도 임금을 축소할 수 없었다.

사용자측은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임금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후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계절적 사업과 건설업 및 고객의 요구에 따른 업무의 과소가 불가피한 수출산업 등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근무시간이 신축적으로 변하면 토요일 휴무, 주휴 2일제가 가능해지므로 노동자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로 근로자가 건강을 해칠 염려가 많으므로 최장 근로시간에 대한 한도를 정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노동자의 임금을 보전해 주며, 시행시 노사합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미국은 26주 및 56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있고, 일본도 1개월 및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ILO 협약도 변형근로제를 채택하고 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2주 또는 1개월 단위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려면 취업 규칙에 근로시간 배분에 대해 명시하고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48시간 이내로 하면 된다. 노사간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용이 가능하다.

노동계는 변형근로제에 대해 최장 근로시간의 한도를 정하고 임금을 보존해 주며 시행시 노사합의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

국제단체들은 우리나라  
노동법 규정 중  
개정되어야 할  
최우선 순위로  
복수노조 금지 문제를  
지목하고 있다.

### 3. 복수노조와 제3자 개입금지

#### 가. 복수노조

기존 노동조합법은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의 경우”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복수노조를 금지하였다. 복수노조 허용 문제는 우리나라가 ILO에 가입한 이래 중요한 쟁점 사항이 되어 왔으며 민주노총의 설립 신고가 반려된 이후 더욱 논의의 초점이 되어 왔다. ILO를 비롯한 국제단체들은 우리나라 노동법 규정 중 개정되어야 할 최우선 순위로 복수노조 금지 문제를 지목하고 이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사용자측은 단위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노조간 분쟁이 격화되고, 교섭 구조가 복잡해지며, 교섭 비용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해 왔다. 특히 상급단체의 복수노조 허용이 사실상 강성 기조인 민주노총의 합법화를 의미하여 문제가 되어 왔다. 노동계는 복수노조의 금지가 노동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며, 단결권을 보장한 헌법과 배치되고, ILO의 협약에도 어긋난다는 점에서 복수노조의 허용을 요구해 왔다. 또한 복수 노조가 허용되면 노조 상호간 선의의 경쟁으로 민주적 노동운동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노조 설립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어 복수노조가 가능하다. 그리고 단체교섭시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하여 근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노조만 교섭 당사자로 인정하는 ‘배타적 교섭권’ 제도를 두고 있다. 일본도 상급단체뿐만 아니라 단위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있다. 개정된 법에서는 복수노조를 상급단체와 단위 기업 모두에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급단체의 경우 2000년, 단위 기업의 경우 2002년까지 복수노조를 유예하였고 교섭 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 교섭의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 등도 2002년까지 강구하도록 규정하였다.

### 나. 제3자 개입금지

복수노조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있다. 동 조항은 재야 노동계가 노조활동, 특히 노동쟁의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따라서 해당 노조의 근로자나 합법적인 상급단체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노조 활동에 개입할 수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최근 세 차례에 걸쳐(1993년, 1994년, 1996년) 정부에 동 규정의 개정을 권고하고 UN 인권이사회도 동 조항을 재검토하도록 결정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논쟁의 초점이 되어 왔다.

노동계는 외부 전문가의 협력 및 조언을 받지 못하면 노동조합의 단결력과 교섭력이 약화된다는 점에서 동 조항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복수노조가 합법화되면 현재 재야 노동계의 대부분을 흡수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사업장 노조의 상급단체, 즉 합법적인 제3자가 되므로 해당 규정이 사문화된다는 점도 들고 있다. 사용자측은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위법한 쟁의 행위에 가담하여 합리적인 교섭을 방해하고 분규를 장기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노동쟁의에 제3자가 개입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개정법에서는 제3자 개입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노사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로는 노사의 상급단체(예: 노총, 경총, 산별 노련 등), 법령에 의하여 권한을 가진 자(예: 변호사, 노무사, 공무원 등), 당해 사업장의 노사의 요청에 의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된 자 등이 있다.

개정법에서는 제3자 개입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노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하고 있다.

## 4.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 3권

### 가. 공무원

헌법에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서는

노동계는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공무원의 공익적 성격을 들어 노동 3권을 제약하고 있다.

해당 공무원을 노무에 종사하는 현업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공무원 복무 규정에서는 정보통신부, 철도청 및 국립의료원의 공무원을 현업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률이 1989년에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화되지 못한 사례도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고 단체행동권은 금지하는 추세이다. 노동계는 ILO의 권고사항과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도 직업인으로서 보수 등 근로 여건의 개선과 복지증진과 관련된 부문에 대해 자신들의 의사를 집약하고 대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수직, 고위직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과 교원의 공익적 성격이 크다는 점에서 노동 3권을 제약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근무조건 향상은 국민의 부담이 되며 입법과 예산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다는 점, 직무수행상 공공성·공정성·성실성·중립성 등이 요구되어 일반근로자와 다르다는 점, 공무원의 노조 결성이 국가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해 개정법은 기존 법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나. 교원

교원의 경우에도 국·공립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으로,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에 적용되는 법률의 준용으로 노동 3권이 제약되고 있다. 현재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원 단체로 교총이 있지만 노동조합으로 보기는 힘들다. 교사의 노동 3권 문제는 1989년 전교조가 결성된 이후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전교조가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상 조직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이며 ILO(1993년 이후 4차례)와 UN(1995년)에서 교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도록 우리 정부에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노동계는 교원의 단결권 인정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들어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을 허용하고 단체교섭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가 교원의 근로자로서의 권익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측도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노동 3권을 전부 허용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국·공립 교원의 단체행동권만 불허하고 있다. 개정법에서는 시도별로 교원단체를 복수로 허용하되 교섭협의 대상과 제외 사항을 명시하기로 하고 시행 시기는 1999년으로 정하였다.

개정법에서는 시도별로 교원단체를 복수로 허용하되 교섭협의 대상과 제외 사항을 명시하기로 하고 시행 시기는 1999년으로 정하였다.

〈표〉 주요 개정내용

선택적 근로시간제	취업 규칙 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결정
재량근로시간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한하여 근로시간을 노사간 서면 합의를 기준으로 계산
간주근로시간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최저 취업연령	최저 취업연령을 13세에서 15세로 상향 조정
연월차 휴가	연차 휴가가 30일을 초과할 경우 유급휴가를 주지 않는 것이 가능 연월차 유급휴가를 노사 합의에 의하여 특정 근로일로 대체
휴업 수당	평균 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근로자파견제	실태 파악을 거쳐 빠른 시일내 입법 추진
퇴직금	근로자의 요구시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퇴직금 중간 청산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으로 퇴직금 대체 (연금보험제도)
시간제 근로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통상 근로자와 구별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결정
해고자 조합원 자격	해고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 상실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 단, 노조가 주로 정치활동이나 사회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불법
노조 조직 변경	총회 의결로 노조 조직 변경. 의결 정족수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 찬성
노조 전임자 급여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2002년부터 시행
조합비	조합비 상한선 폐지
교섭권/협약체결권	노조 대표자에게 교섭권과 협약체결권 부여
조정전치주의	노동 쟁의 신고제 대신 조정전치주의 도입. 조정기간은 일반 사업장 15일, 공익 사업장 20일
대체근로	쟁의시 사업장에 대체근로자 투입 가능.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자에 의한 대체근로만 금지. 노동위원회의 승인시 일시적으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로 대체 가능
쟁의 장소	쟁의행위의 장소 제한 규정 폐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쟁의행위는 금지

노조의 경우 노조의 자율성이 확대되며, 노조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산업별 노조로 노조 조직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Ⅲ. 개정법의 영향 및 과제

노동법의 개정은 기업과 노동자뿐만 아니라 정부와 사회일반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노동법이 개정됨으로써 경직적이었던 노동 시장이 유연해지고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이 보유 인력의 규모, 활용, 구성에 있어서 탄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리해고제가 도입됨으로써 기업은 보유 인력을 경기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인력의 활용 측면에서도 기업은 업무량의 변화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인건비 부담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핵심적 업무를 제외한 보조·지원적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를 주로 활용할 것이므로 기업의 인력 구성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연월차휴가 대체 제도, 연차휴가 일수의 상한 설정, 퇴직금 중간 청산제와 퇴직 연금 보험의 도입 등도 기업의 노동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기업은 이에 따라 고용량과 업무시간의 신축성 및 그에 따른 노동비용의 축소를 기반으로 자동화를 비롯한 구조 조정을 활발히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의 경우 노조의 자율성이 확대되며, 노조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산업별 노조로 노조 조직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삭제되어 노조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조합비의 상한선이 폐지되어 노조의 재정적 자립도가 높아지고, 노조 대표자가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현재의 한국노총에 민주노총이 가세함으로써 노조간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노동법 개정 에 반발하여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으로 인하여 노조 조직 변경이 용이해졌고, 민주노총이 기본적으로 산업별 노조를 지향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산업별 노조 결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고용기회가 확대되는 반면 고용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던 인력을 감축할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고용기회가 축소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용 여건이 기업의 여건에 달려 있으므로 개정 노동법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고용에 긍정

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이 유연해짐으로써 기업이 신규채용을 확대할 가능성도 높다. 기업에 있어서 고용이 더 이상 평생고용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기업의 고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반면 개정된 노동법이 시행되면 비전문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고용 불안정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등을 활용하여 자체 보유 인력을 축소할 경우, 그 주요 대상은 비전문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시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의 대상이 주로 단순 사무직 및 기능직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전문직 근로자가 저임금층인 것을 고려하면 노동시장에 있어서도 고급 전문인력과 비전문 인력간의 차이가 임금뿐만 아니라 고용안정 측면에서 발생하여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재정적 부담도 확대될 것이다. 우선 경기 불황시 정리해고제 실시에 따라 해고 노동자가 급증하게 되면 이들에 대한 생활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노동자의 임금 인하를 보전해 달라는 노동계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이에 따른 보전방안도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다. 현재 정부는 실직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에 임금의 20~25%를 1년간 지원하고, 해당 근로자의 교육 훈련비용 전액과 훈련기간 임금의 최고 50%까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대학생인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기금에서 저리로 학자금을 융자해 주며 근로장학기금을 추가로 조성하여 학자금 지급을 대학생 자녀에게까지 확대하려 하고 있다.

개정 노동법으로 인한 고용 불안감과 그로 인한 근로의욕의 저하는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것이며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실직자 증가는 커다란 사회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기업이 경기침체를 이유로 정리해고제를 곧바로 실시할 경우에는 심각한 노사간 대립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법 개정으로 파생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기업은 개정법의 활용보다는 노조 및 근로자와의 협의를 확대하는 등 당분간 노사관계의 안정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정 노동법에 따라 정리해고제 등을 적극적·즉각적으로 실행하여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손해이므로 기업은 고용보험의 확충, 직업교육 및 훈련의 강화 등 제반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대규모 해고를 자제

기업은 개정법의 활용보다는 노조 및 근로자와의 협의를 확대하는 등 당분간 노사관계의 안정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선진적 노사관계  
구축과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서 개정  
노동법의 노시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 자체의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여 인력의 양적인 유연성 외에도 질적인 측면의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근로자의 고용 불안감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하여 기업 내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정리해고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선진적 노사관계 구축과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서 개정 노동법의 노시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정 노동법의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지 못하고 이를 둘러싼 분쟁이 격화된 것은 개정 노동법이 사용자측의 요구조건을 거의 수용한 반면 노동자측의 요구 사항에는 미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불황기의 실직자 증가에 대비하여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한편 고용보험의 실업보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고용보험에 대해 일정한 수준의 부담을 지고, 고용보험제도의 직업훈련 기능 및 재취업 촉진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구조를 획단적으로 만들어 인력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을 확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인자와 구직자를 원활히 연결해 줄 수 있는 인력은행과 같은 직업 알선 및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여 노동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부문에서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이동성 제고에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인력 및 기구를 축소하고, 인력을 재배치하고, 외부전문가 채용을 확대하는 것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내면적 불만의 하나가 바로 정부부문의 효율성 제고 없이 민간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시도한다는 점에 있기 때문이다. **김**



# 정책토론투리포트

## ○ 접대비 환원세제의 개편방향

\* 이 원고는 1997년 1월 21일 「접대비 환원세제의 개편방향」을 주제로 한국조세연구원이 주최한 정책 토론회의 요약입니다. - 편집자 주 -

# 접대비 관련세제의 개선방향

손 원 익/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 요약 -

- 기업의 과도한 접대비 지출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향락산업을 육성하는 등 경제적·비경제적 문제를 야기하므로 접대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의 축소와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 확보 및 접대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최근 몇 차례의 세법개정을 통하여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으며, 1995년과 1996년 세제의 개정방향은 바람직하게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접대비 지출의 축소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고려할 수 있다.
  - 장기적인 정책방향으로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장기적으로는 전액 손금부인하는 방안과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접대비 지출에 한하여 손금을 인정하며, 손금인정액 중에서도 일정비율만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단기적으로는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1인당 한도금액 설정, 고급 사치성 업소에서 이루어진 접대에 대한 손금부인, 접대명세 제출의 의무화,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의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I. 문제의 제기

그동안 접대비는 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인식되어 손금으로 인정하여 왔으나, 이는 기업간의 불공정경쟁을 유발하고 가공영수증에 의한 비자금 조성 및 과도한 접대비 지출로 인한 향락산업과 사치성 서비스업의 육성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또한 지나친 고급·사치성 접대비 지출에 대하여 세제에서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것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므로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기술개발을 통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투명한 사회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이므로 접대비 지출의 손금산입 한도를 적절히 조정하고 접대비 과다지출 법인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제도 개편으로 기업 스스로가 접대비 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유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과도한 접대비 지출 억제를 위하여는 접대수요를 축소하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접대수요는 크게 기업 자신과 각종 행정규제의 수단을 갖고 있는 공공부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기업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공공부문의 과감한 규제 완화 및 폐지가 요구된다.

## II. 접대비 관련세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는 기본금액과 자본금 기준 금액, 매출액기준 금액의 합계로 이루어진다. 1995년까지는 중소기업과 일반기업 모두에 각각의 매출액에 대한 단일비율을 적용하였고, 1995년 세법개정으로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수직적 형평을 이루는 방향으로 관련세제가 개선되었다. 특히 1995년 개정된 세법에서는 그동안 기본금액 등에 적용되던 중소기업, 일반기업이라는 분류 기준을 폐지하였으며, 기본금액을 전 기업 동일하게 2,400만원으로 하고,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차등비율을 적용하여 매출규모가 커지는 것에 비례하여 한도액이 감소하도록 하였다. 또한 1996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자기자본 기준금액을 다시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분류하였으며, 0.2%가 적용되는 매출액규모를 1천억원 이하에서 500억원 이하로 축소하여 1995년 세법개정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 III. 접대비 관련세제의 개선방향

### 1. 장기적 개선방향

접대비 관련세제에 대한 장기적인 개선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접대 관행이 야기하는 경제적·비경제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

도를 지속적으로 축소하여 장기적으로는 일부 선진국과 같이 전액 손금부인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방안은 급격히 늘어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손금산입 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대기업은 3년, 중소기업은 5년의 기간을 고려할 수 있다.

**일정요건의 기준은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과 연계하여 설정해야 할 것이며, 요건을 갖춘 접대비 지출일지라도 부분적으로만 손금산입을 허용하여 기업들이 접대비를 축소하려는 동기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세법이 정하는 일정요건을 만족시키는 접대비 지출에 한하여 손금을 인정하며, 손금 인정 접대비 지출액 중에서도 일정비율(예: 50%)만을 손금산입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일정요건의 기준은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과 연계하여 설정해야 할 것이며, 요건을 갖춘 접대비 지출일지라도 부분적으로만 손금산입을 허용하여 기업들이 접대비를 축소하려는 동기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 2. 단기적 개선방향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행 세계에서 접대비의 신용카드지출 의무규정과 접대비 지출명세서 제출규정을 두고 있으며 신용

카드 의무비율에 미달할 경우 손금산입 범위 내의 접대비 중 신용카드사용 비율에 따라 추가로 접대비를 손금부인하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접대시 1인당 한도액(예: 5만원)을 설정하여 한도액 이내의 사용액만을 손금산입하고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사치성 지출억제를 통한 사용내역 건전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접대인원을 허위로 과다계상하는 문제가 예상되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1인당 5만원 이상이 지출되는 고급음식점 및 골프장 등에서의 접대가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접대받은 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제출을 의무화하거나 강력한 세무행정이 뒷받침된다면 더욱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이다.

둘째, 고급·사치성 업소에서의 접대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특정업소 및 장소에서의 접대행위를 손금불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정업소의 범위로는 현행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의 유흥음식점을, 특정장소의 범위로는 특별 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장소(경마장, 증기식당, 투전기를 시설한 장소, 골프장, 카지노, 스키장)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접대 내역의 건전화 효과 달성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의 확대를 조장할 우려도 있으므로, 위장사업자에 대한 세무행정력의 충분한 뒷받침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접대비 지출명세서가 보다 객관성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명, 회사명, 직책 등 접대를 받은 자에 대한 기록과 접대와 관련된 업무 등을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납세협력비용의 증가가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나, 접대의 수요를 줄이는 동시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넷째,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의 확대를 통하여 신용카드에 의해 대부분의 접대비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신용카드 사용은 접대비 지출의 근거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접대장소의 과표양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현행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에서 우선 10~15%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아울러 위장 신용카드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세무행정 조치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 3. 정책조합(policy mix)

장·단기 개선방안을 조합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들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단기적 개선방향에서 제시된 정책방안들의 도입 없이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만을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방안과 1996년 개정 세법에 의한 손금산입 한도액에서 출발하여 대기업의 경우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중소기업의 경우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매년 균등하게 축소하여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위에서 제시된 일정에 따라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을 축소·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함과 동시에 단기적 개선방향에서 제시된 네 가지 안도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는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가 폐지될 때까지 접대비 지출에 대한 건전화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

**신용카드 사용은 접대비 지출의 근거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접대장소의 과표양성화에도 도움이  
되므로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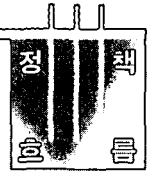
셋째,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접대비 지출액 중에서 일정비율만을 손금산입 허용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제도에 의한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일정요건을 추가 적용하여 한도액을 계산하고, 계산된 한도액 중에서도 일정 비율(예: 50%)에 대해서만 손금산입을 허용해야 한다. 여기서 요구되는 일정요건으로는 단기적 개선방향에서 제시된 정책방안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KT**



# 정책흐름

1. 국세통합 시스템 개통
2. 1997년 시행 국제조세조정어관한법률
3.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4.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관세제도 운영방안
5. 기업상속에 관한 지원 확대
6. 1996 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추정
7.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지분 변동현황
8. 부동산실명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현황





다음은 재정관련 주요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 국세통합 시스템 개통(Tax Integrated System : TIS)

\* 이 자료는 국세청 자료관리관실의 개발담당관실에서 1월 7일에 발표한 「국세통합 시스템 개통」의 내용입니다.

### I. 신시스템 구축 추진경위

◇ 1997년 1월 가동을 목표로 1994년~1996년 3개년간 개발을 추진

#### ○ 1993년

- 8월 12일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경제명령」 시행
- 9월 :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국세전산망 확충 방안 마련
  - 국세 사무자동화 등 국세행정의 re-engineering 을 동시 지향
- 12월 : 개발참여 업체 선정(LG-EDS 등 4개사 공동참여)
  - 상시 투입인원 약 300명(참여업체 220명, 국세청 80명)

#### ○ 1994년

- 국세통합시스템 개발 착수(1월)
- 전산화대상 범위 결정, 장비·통신망 구축 세부계

#### 획 확정

#### ○ 1995~1996년

- 프로그램 개발 및 검증·보완(7,700본)
- 전국 세무관서(160개)에 전산장비·통신망 설치
- 일선세무서 사용자의 전산능력 배양 및 전산전문 요원의 양성
- 새로운 업무체계에 맞추어 사무처리규정 등을 정비

### II. 구축배경 및 목표

○ 국세청은 1966년 발족 이후, 1970년부터 세정에 컴퓨터를 도입하는 등 일찍부터 세정의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

○ 현재의 국세청 전산시스템은 소득자료합산, 세금 계산서 처리 등 방대한 과세자료의 신속처리와 입력자료의 상호대사 등 기본적인 자료처리 기능을 주로 수행하여 왔음.

○ 그러나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납세자수·거래

규모의 증가, 사회전반의 급격한 정보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 현재의 전산시스템과 수작업에 의한 업무처리방식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힘들게 되었고
- 각종 세원정보의 종합적인 연계 활용,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 등으로 인한 방대한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관리가 사실상 곤란해졌으며
- 결과적으로 좀더 낮고, 신속·정확·공정한 납세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어렵게 되었음.

○ 국세청에서는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계기로

-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전산면에서 뒷받침하고
- 또한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던 업무전산화 등 국세행정 전분야에 걸친 정보화차원에서 국세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통합관리하는 「국세통합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된 것임.

### 신시스템 구축 목표

- ◇ 새로운 시책의 완벽한 추진준비
  -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차질없는 집행
- ◇ 2000년대 선진세정의 도약기를 마련
  - 과학화·자동화된 종합 세원관리 체제로 전환
- ◇ 세정개혁 가속화를 위한 기반조정
  - 세정의 객관화로 투명성·신뢰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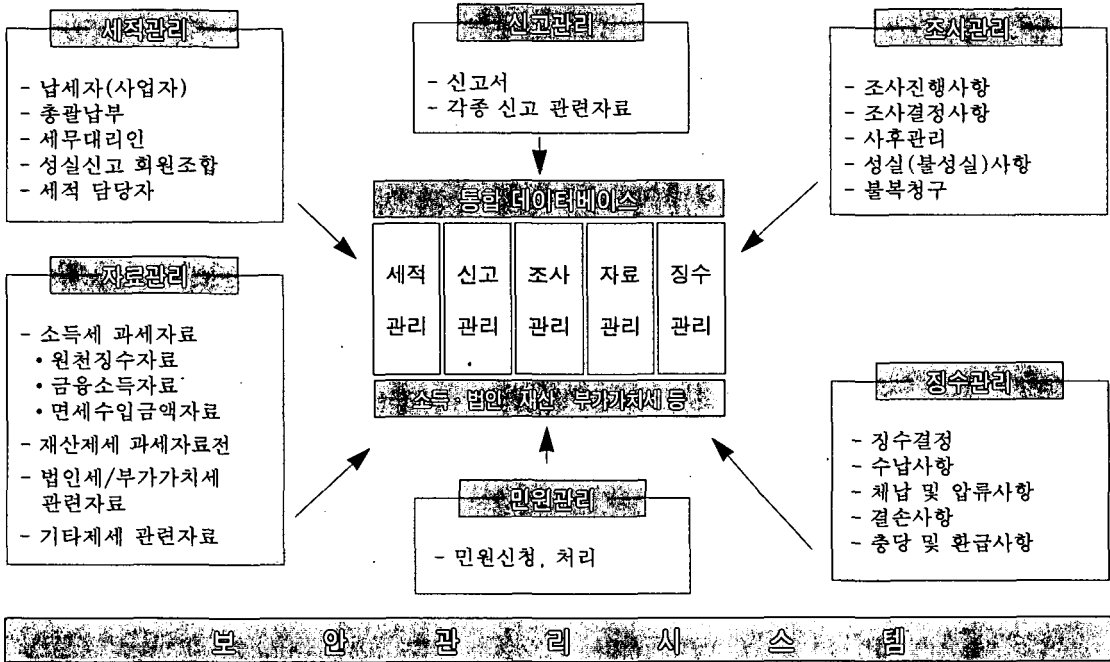
\* 단순한 전산화가 아닌 국세행정 전반의 혁신을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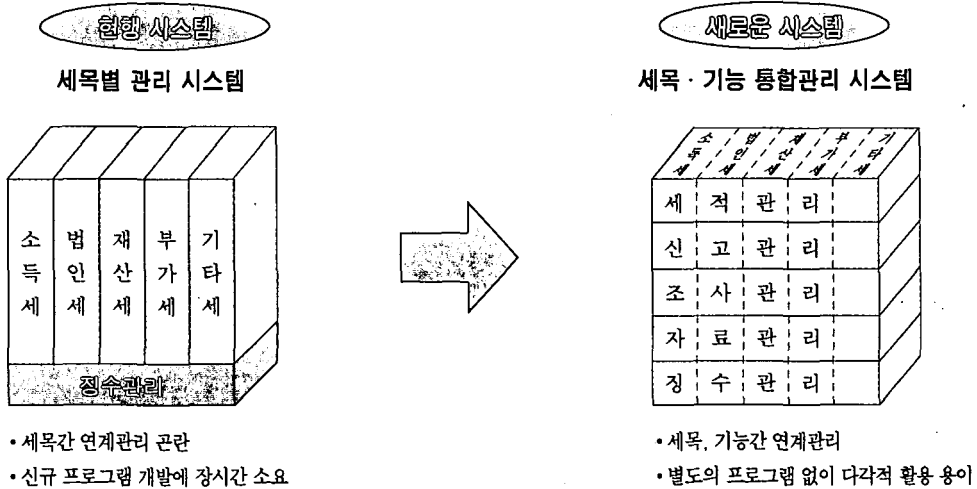
### 기대효과

- 세원관리의 과학화
  - 납세자의 세무정보를 계속적으로 전산관리
- 사무관리의 자동화
  - 신고·조사사항 등 기초자료 입력만으로 각종 보고서·부채 등을 자동작성
- 조사관리의 개선
  - 전산시스템에 의한 조사업무관리 및 중복조사 배제
- 대국민 서비스 수준의 선진화
  - 신속·편리한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 기반 마련 및 세무관서 방문 필요성을 원천적으로 제거

■ 데이터베이스(DB)내용 : 모든 과세정보를 체계적으로 DB에 집중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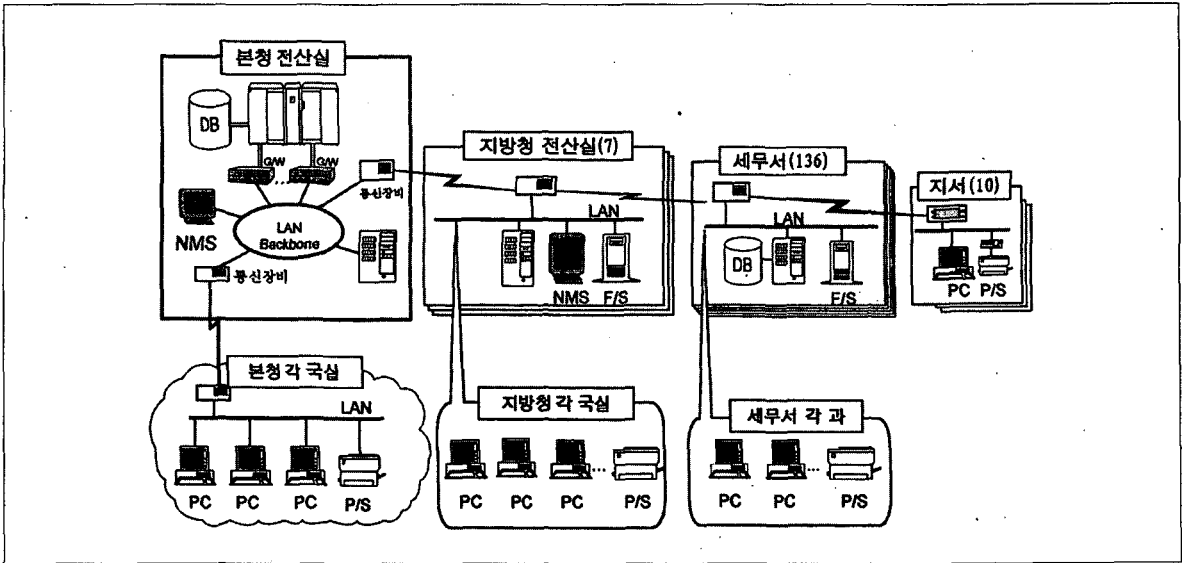
■ 세원정보 관리체계



### III. 신시스템에 의한 국세행정 운영모습

#### 1. 시스템 개요

- 하드웨어(H/W) 및 네트워크(net-work) 구성
- 전국 160개 세무관서를 정보통신망(LAN, WAN)으로 온라인 연결



#### 2. 국민·납세자 측면

- 국세사무자동화로 신속·정확한 납세 서비스 제공
- 전산시스템에 의한 온라인 업무처리로 민원업무 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세무관서 각 분야가 전산망으로 연결되므로 납세자가 세무관서의 각 과를 방문할 필요가 없음.

- 납세완납증명 : (중전) 건당 10분 → 3분 (연간 74만건)
- 표준재무제표증명 : (중전) 건당 1시간 → 3분 (연간 29만 3천건)
-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확인원 : 10분 → 3분 (연간 12만 9천건)

- 민원실에서 윈스톱 처리하는 민원서류를 대폭 확대하고, 주소지 또는 사업장 중 납세자가 편리한 곳에서 발급받도록 개선

- 1997년 하반기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

- 10종의 민원서류를 부분적으로 전산발급
  - 사업자등록업무,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 납세완납증명, 미과세증명 등

**【신시스템】**

- 18종의 주요 민원서류를 전산으로 즉시 발급
  - 납세사실증명, 징수유예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 담당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도 민원처리 가능

- 전산시스템에 의한 정보공유로 담당직원이 없는 경우 관리자 또는 타직원이 민원인이 원하는 사항을 즉시 확인서비스

■ 선진화된 다양한 납세서비스의 제공

○ 정확한 세액계산·관리로 납세자의 편의제공 및 권익보호

- 현재 35% 수준인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서비스를 거의 100% 전산으로 즉시 제공(연간 등기자료 250만건)
  - 신속·정확한 세금계산으로 민원인 편의를 크게 제고
  - 아파트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도 동·호수만 입력하면 세액이 즉시 계산되어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 부동산 양도신고서의 즉시처리서비스 제공
  - 1997년 1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양도신고서 처리

시 신고서 접수창구(재산세과)에서 신고대상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세액을 자동계산하고 납부서, 신고안내서 등을 즉시 전산으로 출력하여 교부

- 신고서 입력시 세액계산의 정확성 여부 자동검증 등 모든 세금계산·신고·고지내용 등 국민의 재산권 관련 사항을 투명하게 관리

○ 납세자가 필요한 정보를 현장에서 즉시 제공

- 민원서류 처리현황을 컴퓨터 화면으로 즉시 파악 가능
  - 접수일자, 처리기한, 처리완료여부, 보완요구내용·일자 등
- 체납세금납부시 정확한 정보의 신속 제공

- 납세자가 본인의 체납세금 존재여부, 체납한 세금내역을 전산화면으로 즉시 확인한 후 세금을 낼 수 있고
- 세금일부 납부의 경우에도 가산금, 증가산금의 내용을 일일이 수동 확인할 필요 없이 컴퓨터 화면으로 즉시 확인처리

- 납세자가 본인의 과거신고상황, 세금고지 및 납부내용 등을 추가적인 증명자료 제출 없이 즉시 확인

○ 불필요한 서류제출, 세무관서 방문소지 축소

- 납세자의 세적 등 세원정보와 주민등록정보의 전산관리·활용으로 주민등록등본의 상당부분 제출생략 가능
  - 연간 주민등록 제출건수 : 약 700만건(인지대 4억 2천만원)

- 전산매체에 의한 세무신고서 제출시스템 운영으로 납세자가 세무관서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세무신고가 가능
  -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신고서를 디스켓 등 전산매체에 일괄수록하여 세무대리인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토록 함.

-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이 발부된 경우 전화 문의로 세금완납 유무를 즉시 확인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체계 개선으로 납세자의 불편 제거  
 - 한번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를 휴폐업, 세적이전 등의 경우에도 계속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가 변경된 등록번호를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회사 등에 일일이 통보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납세자별 세원정보를 계속적으로 누적관리토록 함.

■ 업무처리의 투명성·공정성이 크게 높아짐.

○ 각종 세무신고실적, 세금납부 및 과세자료 제출내용 등을 전산으로 정확히 관리하므로, 공정하고 명확한 업무처리 가능  
 - 주요 처리과정 및 결과가 투명하게 전산으로 관리됨.

○ 납세자의 신고내용 중 누락·오류사항을 신속히 전산으로 가려내 납세자에게 자율적 시정기회를 조기 제공

3. 국세행정측면

■ 사무관리자동화

신속·정확한 업무처리, 종이 없는 사무실을 지향

	현행 시스템	신시스템
업무처리체계	- 수작업위주 일부 전산활용	- 전산시스템에 의한 처리중심
주요부채관리 보고·통계작성	- 세제장, 관리부 등을 수동작성, 활용	- 기본자료 입력으로 전산작성·활용

\* 전산화 내용 : 주요부채 770종, 보고·통계 550종

■ 세적관리체계 개선

관리체계 혁신 및 세적정보의 공유를 목표

	현행 시스템	신시스템
사업지관리	- 사업자등록·휴폐업 등을 수작업 처리 및 관리	- 납세자의 세적자료를 체계적으로 전산관리
등록번호 부여체계	- 사업장 이동시마다 새로운 번호를 부여	- 한번 부여된 번호를 계속 사용, 누적관리
세적정보 활용	- 업무간 공유범위 미미	- 모든 업무에 공동 활용

\* 사례

- 신고안내대상자·무신고자 등을 전산으로 자동선정 (수작업 불필요, 누락방지)
- 폐업신고자료에 의해 제적대상 법인명부 출력 활용

■ 징수관리업무의 전산화

업무전반을 전산으로 연계, 자동화함.

	현행 시스템	신시스템
업무체계	- 수작업 위주 업무간 자연연계 미흡	- 고지·수납·체납· 징수·보고 등 업무를 전산수행
고지·수납 체납관리	- 일부 전산관리 - 수납·자료 수동관리	- 징수결정·소인 사후결의 등을 자동수행

\* 사례

- 징수보고서 작성 : 현재 수작업 위주로 7일 소요 → 약 30분~1시간

■ 신고·조사관리체계 개선

전산시스템에 의한 사전·사후관리 범위 확대

	현행 시스템	신시스템
사후결의	- 신고·납부 수동대사 무납부자 결정·환급	- 전산대사로 무납부자 결정 및 환급결의의 자 동수행
조사진행· 결과관리	- 선정에서 결과처리까지 담당자 수동관리	- 조사 결과를 전산으 로 관리

■ 관리자 정보시스템(EIS) 개발

- 국세통합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DB) 자료를 활용하여 관리자의 의사결정 및 정책수립을 위한 주요정보를 제공
- 관리자 업무노트, 분석자료를 즉시 전산으로 제공

■ E-mail 시스템 구축

- 조직내외의 신속한 의사전달을 촉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IV. 앞으로의 국세통합시스템 운영방향

- 신시스템 가동 첫해인 1997년은 통합시스템의 안

정적 운영을 위한 보안·유지보수 및 사용자 교육에 역점을 둘 예정임.

- 효율적 운영체계 확립과 운영요원의 유지보수 능력배양 등

- 앞으로 통합시스템의 유용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

- 신시스템의 조기 안정화 추진과 함께, 세정의 과학화·객관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단계적으로 세정전반의 추가적인 전산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임.

- E-mail 시스템 도입으로 사무신 규제를 통한 일선의 업무량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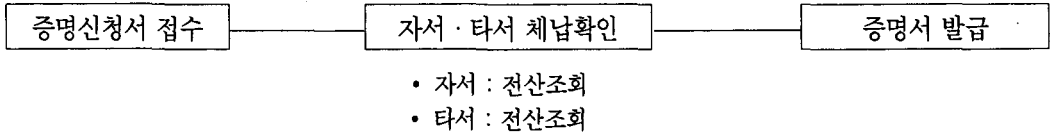
- 업무절차의 간소화·표준화로 직원의 재량범위를 제도적으로 축소하여 세정의 투명성 제고 등

- 2000년대를 향한 세정선진화의 핵심과제로 추진

## 납세완납증명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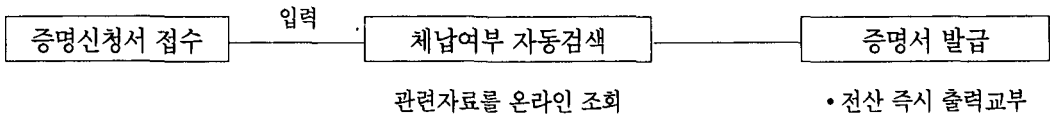
### 【현행】

- 납세자가 증명신청한 관서의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장 세무서 등에 체납여부 재확인 후 수동발급
- 건당 평균 10분 소요, 연간 74만건



### 【신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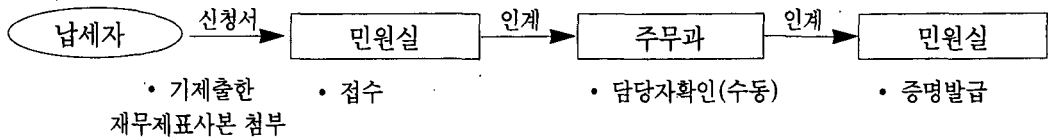
-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전산시스템에 수록된 자료에 의하여 즉시 세금완납여부를 검색하여 증명서를 발급
- 건당 평균 2~3분 예상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발급

###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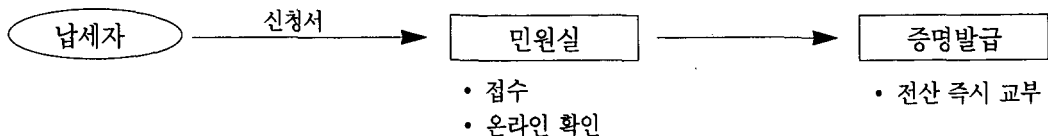
-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재무제표 사본을 첨부하여 민원실 신청 후, 주무과에 가서 담당자 확인을 받은 후 민원실 발급
- 건당 평균 1시간 소요 : 연간 29만 3천건



- \* 기재출한 서류의 사본을 중복제출해야 하고, 민원인의 민원실·주무과 직접방문 및 담당자의 기재내용 수동확인 등 불편

### 【신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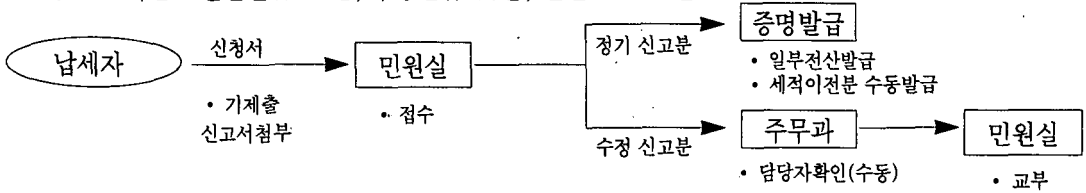
- 전산입력된 신고서의 내용에 의해 즉시출력 발급
- 건당 평균 1~2분 예상



소득세 징수액집계표 확인원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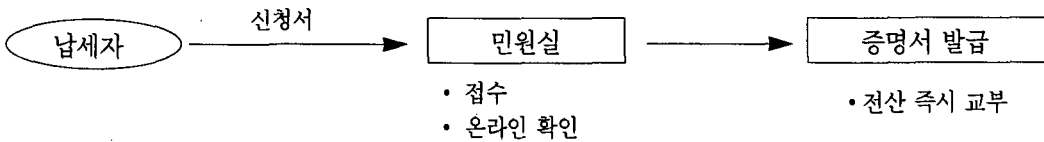
【현행】

- 소득세 징수액집계표 분산처리 가능한 수도권 소재지 일부관서에서만 민원실 전산발급이 가능하며 수정신고분의 경우는 수동발급함
- 건당 소요시간 : 전산발급 10분, 수동발급 30분, 연간 12만 9천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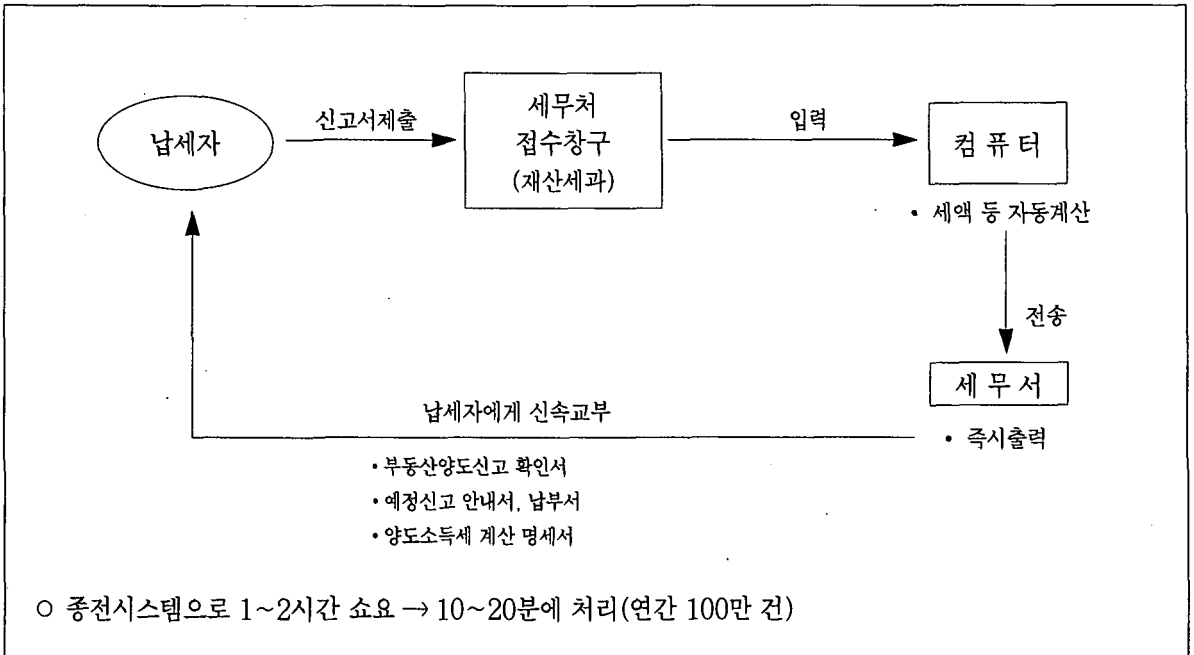


【신시스템】

- 모든 유형의 확인원을 민원실에서 온라인으로 전산발급
- 발급시간 : 1~2분 예상



부동산 양도신고 처리흐름도



- 종전시스템으로 1~2시간 소요 → 10~20분에 처리(연간 100만 건)

## 1997년에 새로 시행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 이 자료는 재정경제원 세제실 국제조세과에서 1월 10일에 발표한 「'97 새로이 시행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내용입니다.

### 주요내용

- WTO 출범, OECD 가입 등 우리 경제의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제거래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다양해지고 있음.
  - 이에 OECD 규범 등 국제적인 과세규범을 대폭 수용한 국제거래에 대한 조세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1995년 12월에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음.
  - 동 법률은 우리 경제의 세계화 및 자유화 확대 등에 따라 예상되는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중 이전가격세제, 국외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상호합의절차 및 국가간 조세협력 부분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아래 제도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정임.
  - 과소자본세제
  - 조세피난방지세제
  - 이전가격세제 중 정상가격 사전승인제도
  
- 과소자본세제와 조세피난방지세제에 의하여 과세소득의 변동이 초래되는 납세자는 법인세(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를 신고해야 하는바, 동 신고에 필요한 서식 등이 포함된 시행규칙을 1996년 12월 31일자로 개정·공포

**과소자본제도**

**1. 제도의 의의**

- 통상 각국의 세법에서는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는 데 반해, 배당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따라서 다국적기업이 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진출할 때 자본금을 적게 하고 차입금을 많게 하여, 진출국에서의 과세소득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음.
  - 이에 대하여 진출국에서는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간의 과도한 차입금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 즉 과소자본제도는 다국적기업이 진출국에서 차입금을 증가시켜 국제간의 조세회피를 도모할 경우에 대비한 제도임.

**2. 도입의 필요성**

-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모두 과소자본규제제도를 운용중이며 최근 도입하는 국가가 급증하고 있음.
  - 따라서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외국의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반면,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는 국내제도의 미비로 적용이 불가능하였음.
- 외환규제 및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단계적으로 자유화할 계획이므로 외국자금의 유출·입이 현재보

다 자유로워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과소자본세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차입금 중심으로 운용하는 외국자본을 자본화하도록 하여 외국자본 도입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음.

**3. 주요 입법내용**

- 「국외지배주주의 부채 대 자본비율」이 3배(금융업의 경우에는 6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배당으로 간주하여 손금부인.
  - 그러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일지라도 그 거래조건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동종 업계에서 통상 인정될 수 있는 정상적인 부채 규모까지는 동 세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국외지배주주라 함은 내국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의 주주·출자자 등을 가리킴.
- 적용대상은 과소자본규제제도가 소득의 대외유출을 규제하는 취지로 발전된 제도임을 감안하여 외국계기업에만 한정하여 적용.
  - 과소자본세제는 역사적으로 국외지배주주가 비정상적인 자본거래를 하여 국내과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전된 제도임.
  - 과소자본규제제도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들도 실지 운용상 외국계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를 주목적으로 하는데, 우리도 이러한 예를 따름.

## 조세피난방지제도

### 1. 도입 배경

- 조세피난처에 대한 과세제도는 다국적기업이 법인세 부담이 낮은 지역(조세피난처)에 가공회사를 설립하여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규율하기 위한 과세제도임.
-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국내기업이 선진국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또한 해외진출 촉진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둔 결과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국내기업의 조세회피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지 못하였음.
  - 그러나 외환 및 자본 자유화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정상적인 해외투자가 아닌 자본도피 목적의 해외진출이 우려되고 우리 기업이 다국적화되면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국외원천소득의 조세회피 소지도 커짐에 따라 이를 규제할 제도 보완이 필요하게 된 것임.

### 2. 주요내용

#### 1) 적용대상 내국인 및 특정외국법인

- 조세피난처에 대한 과세제도의 적용대상자는 조세피난처에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총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거주자 내국법인)으로서 당해 외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를 말함.

- 특정외국법인이라 함은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으로서 내국인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거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 파견 등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함.

#### 2) 조세피난처의 개념

- 조세피난처라 함은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가리킴.
  - '실제발생소득'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한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을 말함. 다만 당해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을 실제발생소득으로 봄.
  -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라 함은 업종·회사형태 또는 소득원천지별로 실제발생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동 소득의 50% 이상에 대하여 감면하는 제도를 가진 국가 또는 지역을 가리킴.
  -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라 함은 그 거주지국 세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세가 동 법인의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가리킴.

### 3)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 내국인에게 배당으로 간주되는 금액은 특정 외국 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당해 내국인의 특정 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 비율을 곱하여 계산

### 4)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의 적용 배제

-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는 내국법인 등이 해외 조세 피난처에 가공회사(paper company) 등을 설립하여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는 경우 동 유보소득을 동 내국법인 등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정상적인 해외진출기업(적극적 사업활동을 통한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음.
  - 즉 특정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점포·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지 아니함.
  - 다만 주로 특수관계자와 거래하거나 소득이 주로 이자·배당·부동산 소득 등 수동적인 소득을 얻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피난처에 대한 과세제도를 적용함.

### ○ 도입시 기대되는 효과

-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는 확정된 방법이 없고 일반적으로 적용기간이 장기이며 과세규모가 크므로 사전합의를 할 경우, 사후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조세마찰을 제거할 수 있음.
- 납세자가 과세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능동적인 정보제공을 유도할 수 있음.
- 납세자에게는 과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으며, 과세당국에는 사후에 세무조사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음.

## 2. 주요 내용

-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은 일정기간의 과세연도에 적용될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그 과세연도 개시 전에 국세청장에게 승인신청가능.
  - 승인된 방법은 중대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양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음.
- 승인기간은 3년을 한도로 하되, 추가로 3년을 연장할 수 있음.

##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

### 1. 제도의 의의

- 이 제도는 과세연도 개시 이전에 과세당국과 기업이 정상가격의 결정방법을 미리 결정하는 것임.
  - 즉 과세이전에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결정에 관한 적절한 기준(appropriate set of criteria)을 과세당국과 기업이 합의하는 제도임.

-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중립적 위치에 있는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음.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는 사전승인신청의 심사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승인신청의 기각·철회시에는 제출된 모든 자료를 반환토록 하여 납세자의 비밀보호를 도모함.

##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 이 자료는 재정경제원 예산실 재정계획과에서 1월 13일에 발표한 「지자체 국고보조금 지원제도 개선」의 내용입니다.

### 주요내용

- 1997년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규모는 총 5조 8,491억원으로서 1996년 예산 4조 7,310억원 대비 23.6%가 증가되었음
  - 부문별로 보면 농림부문 2조 1,015억원(18.7% 증가), 보건복지부문 1조 4,478억원(29.4% 증가), 환경부문 2,989억원(32.3% 증가), 문화체육부문 2,419억원(102.5% 증가)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증가율이 큼
-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7년 1월 1일부터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고보조사업(358개)의 보조율을 38개 유형에서 7개로 단순·명료화하였음
  - 아울러 지자체가 보조금사업의 탄력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영세보조사업 117개를 42개로 통합하고 14개 사업은 폐지
- 지자체 실시 이후에도 지방비 부담이 큰 사업도 중앙정부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이 선정되어 보조사업 추진이 부진한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 1997년 예산편성시 지방비 부담이 70% 이상인 사업은 지자체 요구를 전액 반영
- 1997년부터 국고보조금 예산요구 과정에서 중앙부처가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보다 강화하도록 하고 편성과정에서도 사업별 우선순위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 편성
- 아울러 예산집행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보조사업간의 전용을 허용하고 집행절차도 간소화할 계획

### 1. 1997년 국고보조금 예산규모

- 1997년 국고보조금 예산규모는 총 5조 8,491억 원으로서 1996년 예산 4조 7,310억원 대비 23.6% 증가되었음.
- 이 중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등 경상보조는 1조 6,674억원, 경지정리·지하철 건설 등 자본보조는 4조 1,817억원임.
- 1997년 소관별 국고보조금을 보면 농림부 2조 1,015억원으로 전년대비 18.7% 증가되었고, 보건복지부 1조 4,478억원(29.4% 증가), 건설교통부 6,837억원(3.1% 증가), 환경부 2,989억원(32.3% 증가), 문화체육부 2,645억원(102.5% 증가), 교육부 1,904억원(45.2% 증가) 등임.

### 2. 국고보조를 체계의 단순·명료화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1996.12.31)하여 정률보조사업(358개)의 보조율을 전체사업 투입재원을 대상으로 일원화하고

$$* \frac{\text{국 고}}{\text{국고+지방비}} \rightarrow \frac{\text{국 고}}{\text{국고+지방비+재정용자+수의자부담 기타}}$$

- 국고보조율의 유형도 38개에서 7개로 대폭 단순화하였음.

1996년 예산(보조율 38개) 1997년 예산(보조율 7개 유형)

- |                |   |             |
|----------------|---|-------------|
| • 100~80%(74개) | → | • 100%(35개) |
| • 80~61%(107개) |   | • 80%(48개)  |
| • 60~31%(203개) |   | • 70%(41개)  |
| • 30~11%(61개)  |   | • 50%(126개) |
| • 10%이하(8개)    |   | • 40%(29개)  |
|                |   | • 30%(45개)  |
|                |   | • 20%(34개)  |

### 3. 국고보조금사업의 통·폐합 추진

- 1997년 예산은 대상사업의 성격이 유사하지만 사업상호간 유무상통이 곤란하게 되거나 해당 지자체에 대한 지원규모가 지나치게 영세하여 지원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보조사업 117개를 42개로 통합함으로써 집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
- 사업기간이 종료하였거나 용자로 전환되는 14개 사업은 폐지

#### 【사업통합(예시)】

소관부처	현행 사업명	통합사업명
농림부	지하수 개발·지표수 개발	일반용수 개발
농림부	잔류물질 검사장비 · 원유검사장비	축산물 검사
보건복지부	불임시술·자궁내장치시설 · 피임약제거구	가족계획 시술
보건복지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모자보건관리
보건복지부	부랑인 시설운영, 부랑인 재활사업	부랑인시설보호

**【폐지사업(예시)】**

소관부처	현행 사업명	통합사업명
농림부	인삼종합전시장시설 지원	-
보건복지부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지원	-

- 1998년 예산은 우선 요구과정에서부터 중앙부처가 지자체와 협의를 보다 강화하도록 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사업별 우선순위에 대한 지자체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여 예산 반영

**4. 국고보조사업 결정에 있어 지자체의 사업우선순위 최대한 반영**

- 지자체가 국고보조사업 예산 신청시 중앙부처의 실·국별 사업계통에 따라 개별화함으로써 지자체별 전체 대상사업의 우선순위 파악이 곤란
  - 해당부처는 지자체의 의사보다는 중앙부처의 정책순위에만 집착하게 되어 사업추진 여부·규모 등을 중앙부처에서 임의 선정하는 결과 초래
  - 결과적으로 지자체는 지방비 부담비율이 높고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지방비 부담은 낮지만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이 통지되어 지자체의 사업추진의욕 저하 등 비효율화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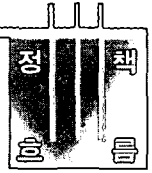
- 1997년도 예산은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비 부담비율이 70% 이상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요구수준을 반영

(단위 : 억원)

	1997년 요구	1997년 반영
도시쓰레기소각시설 (융자→보조 30%)	608	608
지하철 건설	8,017	8,017
- 서울 (25% 수준 보조)	2,356	2,356
- 지방 (30% 수준 보조)	5,661	5,661

**5. 보조금 예산집행의 탄력성 제고 및 집행절차의 간소화**

- 현행 관련법상 보조사업 상호간의 전용 불가로 탄력적인 사업집행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동일 중앙관서 보조사업간의 전용 허용을 검토
  - 아울러 보조금 집행상의 절차 간소화도 추진



### 1997년도 소관별 국고보조금 예산 규모

(단위 : 억원, %)

	1996년 예산			1997년 예산				비율
	계(A)	경상	자본	계(B)	경상	자본	(B-A)	
합 계	47,310	13,278	34,032	58,491	16,674	41,817	11,181	23.6
농림부	17,702	504	17,198	21,015	541	20,474	3,313	18.7
보건복지부	11,195	10,060	1,135	14,478	13,126	1,352	3,283	29.4
건설교통부	6,629	105	6,524	6,837	24	6,813	208	3.1
환경부	2,260	448	1,812	2,989	435	2,554	729	32.3
해양수산부	2,313	270	2,043	2,502	335	2,167	189	8.2
문화체육부	1,306	126	1,180	2,645	226	2,419	1,339	102.5
교육부	1,311	230	1,081	1,904	414	1,490	593	45.2
통상산업부	649	10	639	1,402	67	1,335	713	11.6
내무부	982	208	774	1,325	70	1,255	343	34.9
노동부	279	23.6	43	191	156	35	-88	-31.2
외무부	35	35	-	46	46	-	11	31.4
국가보훈처	-	-	-	30	-	30	30	신규
과학기술처	20	-	20	-	-	-	-20	-100.0
산림청	1,476	199	1,277	1,777	239	1,538	301	20.4
농촌진흥청	334	28	306	387	29	358	53	15.9
병무청	819	819	-	963	963	-	144	17.5

##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관세제도 운영방안

\* 이 자료는 재정경제원 세제실 관세제도과에서 1월 11일에 발표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관세제도 운영방안」의 내용입니다.

### 주요내용

#### 1. 개요

- 1997년도 경제운용에 있어서 무역수지 개선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이므로 관세부문에 서도 무역수지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세제도 운영(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임

#### 2. 주요골자

- 수출촉진을 위한 관세제도 운영
  - 사후정산제의 도입 등 관세환급제도 개편
    - 수출용 건본품 생산을 위한 수입원자재에 대하여도 관세환급 적용
  - 수출보세운송제도의 폐지 등 수출통관절차의 간소화
  - 기초원자재의 무세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 수입의 적정관리를 위한 관세제도 운영
  - 통관 후 사후관리의 강화
  - 조정관세부과 및 산업피해구제제도의 활용
  - 수입물품 recall제도 운영 강화
- 관세협력의 강화
  - 방콕협정을 통한 중국의 관세인하 유도
  - 국제적인 통관절차 개선을 통한 교역 활성화 도모
  -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통관 애로사항의 해결

##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관세제도 운영(안)

-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크게 수출의 촉진과 수입의 적정관리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음.

### 1. 수출촉진을 위한 관세제도 운영

#### 가. 관세환급제도의 개편(1997년 7월 1일 시행)

##### <주요내용>

- 수출용원재료 수입시 환급금을 분기별로 정산처리하는 '사후정산제도'를 실시
- 수출제품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소요량을 기업이 스스로 계산토록 하는 '자율관리 소요량제도' 실시
- 해외 수출용 견본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자재에 대해서도 관세환급 적용
- 환급절차의 전산화

##### <기대효과>

- 연간 약 2,700억원의 비용절감
- 환급 소요일 평균 10일 → 즉시 환급체제

#### 나. 수출관련 통관절차의 간소화(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중)

- 수출면허제를 수출신고제로 전환
  - 수출통관시 세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면허제를 신고 즉시 통관이 되는 신고제로 전환
- 수출보세운송제도의 폐지

- 수출통관된 물품을 공항만으로 이동시 세관의 보세운송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고 어디서나 통관 후 30일내 운송토록 함.

#### 다. 기초원자재의 무세화 추진

- 국내생산이 안되는 비경쟁 기초원자재를 원칙적으로 모두 무세화
- 다만 자원절약형 산업구조가 필요한 품목은 현행 세율 유지
  - (예) 원유, 펄프
  - 무세화하더라도 수입유발보다는 완제품의 수출잠재력 향상에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

### 2. 수입의 적정관리를 위한 관세제도 운영

#### 가. 통관 후 사후관리의 강화

- 통관은 간소화하되 통관 후 수입신고내용의 적법성 여부조사를 강화
  - 상실수입판매장에 대한 관리 강화
  - 물품조사 중심에서 기업사후조사로 전환
  - 과도한 유통마진이 있는 경우 내국세 당국에 통보
- 다만 통상마찰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정물품 중심보다는 표본조사방법으로 운용

#### 나. 관세감면의 점진적 축소

- 특정산업에 대한 감면은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축소  
(예) 첨단산업제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1997년에 종료 → 시설재에 대한 수입억제 효과
- 연구개발·환경오염방지 물품 등 기능감면만 존속

#### 다. 조정관세 부과 및 산업피해 구제제도의 활용

-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산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하여 조정관세를 신속적으로 적용
  - 1997년 1월부터 조정관세 대상품목을 확대(1996년 38개 → 1997년 44개)
  -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의류·완구 등에 대해서도 조정관세 적용
- 수입급증에 따라 이미 산업피해가 발생한 품목에 대하여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
  - 다만 무차별적 반덤핑관세부과는 지양

#### 라. 원산지 표시의 강화

-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전량 통관 보류 조치
- 우리나라에서 이적 또는 환적되는 물품에 대하여도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허위표시된 물품은 유치 후 시정명령

#### 마. 수입물품 recall제도 운영의 강화

- 불법 및 부정 원산지표시물품의 recall 가능기간을 수입통관 후 30일 내에서 3개월로 연장
- recall 대상물품의 범위를 확대
  - 현재는 반입명령서를 받을 당시 보유하고 있던 물품만 대상이 되나 앞으로는 의무위반된 물품 전부를 recall 대상으로 확대
- recall제도 불응에 대한 벌칙 강화
  - 현재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강화

### 3. 관세협력의 강화

#### 가. 방콕협정을 통한 중국의 관세인하 유도

- 중국의 방콕협정 가입협상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관심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요청
  - 요청품목 : 자동차·철강 등 HS 8단위 247개 품목 (1995년 기준 수출규모 : 47억달러)
  - 요청세율 : 현행 중국 평균 관세율 23%에 대해 30%의 관세인하를 요구(23% → 16% 수준)
    - \* 우리나라는 방콕협정에 의한 기존양허품목 220개 품목유지(1995년 기준 대중국 수입규모 : 4억달러)

#### 나. 국제적인 통관절차 개선을 통한 교역 활성화 도모

- 종래 선언적·권고적 규범에 불과했던 통관절차

에 관한 교토협약을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으로 개정작업 추진중

- \* 교토(Kyoto) 협약 :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협약(59개국 가입)

○ 개도국들의 통관절차 개선과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출증대에 기여 도모

#### 다.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통관 애로사항의 해결

-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주요 수출국의 통관상 애로점 등을 조사·분석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
  - 각국 주재 재경관, 관세관 활용
  - (예) 대미 우리나라 마늘 수출에 대한 부당관세 부과 조정(1996년 10월)

#### 4. 무역통계체계 개편

##### 【현황】

- 무역통계는 매우 중요한 정책기초 자료이나 일부 무역통계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음.
  - 실제보다 과다 계상되거나 산업 및 무역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 WTO 출범 및 OECD 가입에 따라 UN 「무역통계 작성기준」과 일치시킬 필요성 대두
  - \* 현재 무역통계는 HSK 10단위 품목분류를 기초로 하여 작성

##### 【개편방안 : 예시】

- UN 무역통계 작성기준에 맞게 일부 항목을 통계에서 제외
  - 선박·항공기 등 수리를 위한 수출입
  - 1년 미만의 임대차 방식에 의한 수출입
  - 상품 견본 등 임시 반출입 물품
  - 국내 보세공장 건조선박(BBC 선박) 등
  - 연간 3억달러 내외의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 전망
- 산업 및 무역구조 변화에 맞게 무역통계 분류체계의 개편
  - 과거의 수출 주종품목 위주의 분류(합판·완구 등) → 현재의 수출 주종품목 위주로 분류(반도체·전자·자동차 등)
- 무역통계품목 조정에 탄력성 부여
  - 무역통계관련 HSK의 개정을 관세청에 위임

## 가업상속에 대한 지원 확대

\* 이 자료는 재정경제원 세제실 재산세제과에서 1월 15일에 발표한 「가업상속에 대한 지원확대」의 내용입니다.

### 주요 내용

○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받아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제지원을 강화(1997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

- 일반인의 상속세 기초공제액(2억원)보다 1억원을 추가공제하여 3억원을 기초공제함.

- 일괄공제를 선택할 경우에는 6억원(일반인 : 5억원)을 일괄공제받음.

- 종전에는 가업상속재산에 대하여는 5년간 분납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가업상속재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7년까지 연장함.

- 다만 주식상속의 경우에는 사망자가 10% 이상 출자한 경우에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5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주식에 대해 적용함.

### 1.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 가업상속 : 상속개시일 현재 사망자가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에 사용한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

	종 전	개 정
공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 이상 계속 사업용 자산 가액의 20%를 주택·농지 등과 합하여 1억원까지 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인 상속세 기초공제(2억)보다 1억원을 추가하여 3억원 공제</li> <li>* 일괄공제 선택시 6억원 공제 (일반인 : 5억)</li> </ul>
대상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업·제조업·도소매업·숙박업 및 음식·접업</li> <li>〈추가〉</li> <li>* 농업·축산업·어업은 영농상속으로 지원하고 있음</li> <li>〈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과 같음</li> <li>○ 조감법상 창업중소기업 해당 업종(조감법 시행령 제6조)</li> <li>-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 및 여객운송업), 지식서비스산업(전기통신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폐기물처리업)</li> <li>- 사업자 등록된 사업일 것</li> </ul>
상속인의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할 것</li> </ul>
분납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상속재산 : 3년</li> <li>○ 가업상속재산 : 5년</li> <li>〈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과 같음</li> <li>○ 가업상속재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50% 이상일 경우는 '7년'으로 연장</li> </ul>
주식상속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자가 1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주식을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 가업상속재산으로 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자(특수관계인을 포함)가 50% 이상 출자법인의 주식을 5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 인정</li> </ul>

## 2. 상속세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 ① 상속세 기초공제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인 : 1억원</li> <li>  &lt;신설&gt;</li> <li>  &lt;상속인 공제&gt;</li> <li>○ 영농·영여상속인 : 1억원 추가 공제</li> <li>○ 임업상속인 : 2억원 추가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인 : 2억원</li> <li>○ 가업상속인 : 3억원</li> <li>○ 영농·영여, 임업상속인 : 4억원</li> </ul>

### ② 상속세 일괄공제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신설&g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속인의 인적구성에 따라 항목별 공제 (기초공제+자녀·연로자공제 등) 대신 일괄공제 선택허용</li> <li>○ 일괄공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인 : 5억원</li> <li>가업상속인 : 6억원</li> <li>영농·영여, 임업상속인 : 7억원</li> </ul> </li> <li>* 배우자 상속공제는 일괄공제와 별도로 인정</li> </ul>

## 1996 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추정

\* 이 자료는 재정경제원 국고국 국고과에서 1월 9일에 발표한 「1996 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추정」의 내용입니다.

### 주요 내용

#### ○ 세계잉여금 전망

- 1997년 1월 6일 현재 한국은행에 납입된 세입금 총액에 따라 「1996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추정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 세입초과 전망액 : 2,500억원
  - 예상불용액 : 2,500억원
  - 순세계잉여금 추정액 : 5,000억원
- 산출근거
  - 세입금액 : 한국은행 일반회계 세입금 집계액 + 국세수납계정 이체 예상금액
  - 불용금액 : 각 부처 불용예상액 집계치

#### ○ 세계잉여금의 처리

- 동 세계잉여금은 1996 회계연도 결산이 확정(1997년 6월)된 이후 그 처리방안을 결정할 예정임
-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가능한 한 국가채무상환에 사용하되 세입진도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 처리방안을 결정할 예정임

## 세계잉여금 처리근거

- 순 세계잉여금은 예산회계법 제47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 용도에 사용할 수 있음
-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확정된 국가배상금
  - 다음연도 세입에의 이입

## 세계잉여금 처리내역

(단위 : 억원)

	1991	1992	1993	1994	1995
세계잉여금	10,412	7,022	5,548	13,062	4,065
처리내역					
○ 채무상환	7,395	997	5,548	13,062	1,000
· 재정증권이자	2,522	-	1,010	-	-
· FMS차관원리금	573	-	-	164	-
· 외평기금결손보전	-	-	3,338	4,398	-
· 양곡증권원리금	4,300	997	1,200	5,500	-
· 비료계정결손보전	-	-	-	3,000	1,000
○ 익년도 세입이입	3,017	6,025	-	-	3,065
(추경재원)	(3,017)	( - )			(3,065)

##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지분 변동현황

\* 이 자료는 재정경제원 국고국 재정투융자과에서 1월 8일에 발표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지분 변동현황」의 내용입니다.

### 주요 내용

- 1996년말 현재 정부투·출자기관에 대한 정부출자지분은 총 19조 1,249억원으로 1995년 말에 비하여 8,692억원이 증가하였음
  - 1996년중 한국산업은행, 한국도로공사 등 9개 투자기관에 대한 현금 출자규모(1조 101억원)만큼 정부지분이 증가하여야 할 것이나
  - \* 1996년중 출자 : 산업은행 2천억, 농수산물유통공사 22억, 농어촌진흥공사 200억, 석탄공사 200억, 광업진흥공사 60억, 가스공사 200억, 주택공사 212억, 도로공사 6,218억, 수자원공사 989억
  - 정부가 소유한 한국통신(1,266억원) 및 국민은행 (143억원) 주식의 매각으로 인한 지분감소액 1,409억원이 감안된 결과임
- 이와 같은 정부출자에도 불구하고 27개 정부투·출자기관의 정부지분율은 85.6%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1.5% 감소
  - 이는 정부출자 이외에 공모증자 등을 통한 투자기관의 납입자본금 증가와 정부소유주식의 매각에 따른 정부지분 감소에 기인
  - \*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한국산업은행의 출자 2천억원,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한국전력공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197억원, 기타 국민은행 및 주택은행·한국종합기술금융의 공모증자 1,590억원 등으로 납입자본금이 3,787억원 증가

###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지분 변동현황

(단위 : 억원, %)

	1995년 말			1996년 말			증 감		
	납 입 자본금	정부지분	정 부 지분율	납 입 자본금	정부지분	정 부 지분율	납 입 자본금	정부지분	지분율
한국산업은행	16,135	16,135	100.0	18,135	18,135	100.0	2,000	2,000	-
중소기업은행	5,077	3,276	64.5	5,077	3,276	64.5	-	-	-
한국조폐공사	66	66	100.0	66	66	100.0	-	-	-
한국담배인삼공사	13,806	13,806	100.0	13,806	13,806	100.0	-	-	-
농수산물유통공사	510	510	100.0	532	532	100.0	22	22	-
농어촌진흥공사	764	764	100.0	964	964	100.0	200	200	-
무역투자진흥공사	5	5	100.0	5	5	100.0	-	-	-
한국전력공사	31,183	23,594	75.7	31,183	23,594	75.7	-	-	-
대한석탄공사	2,583	2,531	98.0	2,783	2,731	98.1	200	200	0.1
대한광업진흥공사	1,333	1,306	98.0	1,393	1,366	98.1	60	60	0.1
한국석유개발공사	13,058	13,058	100.0	13,058	13,058	100.0	-	-	-
한국가스공사	2,070	1,038	50.1	2,467	1,238	50.2	397	200	0.1
대한주택공사	34,415	33,768	98.1	34,627	33,980	98.1	212	212	-
한국도로공사	31,044	30,920	99.6	39,202	37,138	94.7	8,158	6,218	- 4.9
한국수자원공사	12,826	12,385	96.6	13,815	13,374	96.8	989	989	0.2
한국토지공사	10,500	9,745	92.8	10,500	9,745	92.8	-	-	-
한국관광공사	324	182	56.1	324	182	56.1	-	-	-
한국전기통신공사	14,396	11,516	80.0	14,396	10,250	71.2	-	- 1,266	- 8.8
투자기관 계	190,095	174,605	91.9	202,333	183,440	90.7	12,238	8,835	- 1.2
국민은행	3,910	936	23.9	4,000	793	19.8	90	- 143	- 4.1
한국수출입은행	6,859	3,059	44.6	6,859	3,059	44.6	-	-	-
한국주택은행	1,150	1,100	95.6	2,350	1,100	46.8	1,200	-	- 48.8
한국감정원	60	29	49.4	60	29	49.4	-	-	-
포항종합제철	4,695	918	19.6	4,695	918	19.6	-	-	-
한국방송공사	1,512	1,512	100.0	1,512	1,512	100.0	-	-	-
서울신문사	544	272	49.9	544	272	49.9	-	-	-
국정교과서	82	33	40.0	82	33	40.0	-	-	-
한국종합기술금융	612	93	15.2	912	93	10.2	300	-	- 5.0
출자기관 계	19,424	7,952	37.5	21,014	7,809	37.2	1,590	- 143	- 0.3
합 계	209,519	182,557	87.1	223,347	191,249	85.6	13,828	8,692	- 1.5

## 부동산실명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현황

\* 이 자료는 재정경제원 금융·부동산실명제실시단에서 1월 10일에 발표한 「부동산실명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현황」의 내용입니다.

### 주요 내용

- 실명전환 유예기간(1995년 7월~1996년 6월) 만료 후 1996년 7월~12월중 각 시·군·구의 명의신탁부동산 적발 및 과징금 부과 건수는 23건, 금액으로는 8억 8천만원에 이르고 있음
  - 부동산실명제 실시 이전에 이루어진 기존 명의신탁을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의 신규 명의신탁으로서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한 사례도 발생

#### 〈과징금 부과 추이〉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 건수(건)	-	1	2	8	7	5	23
· 금액(천원)	-	493	2,520	56,017	262,330	554,433	875,793

- 이러한 위반사례들은 시·군·구에서 부동산관련 업무수행시 자체적발된 경우 외에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 등에 의한 제보, 세무조사·수사 과정 등에서도 노출
- 지속적인 홍보와 불법명의신탁 적발 과징금 부과 등으로 부동산실명제 정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음

## 과징금 부과 사례

통지 및 형사고발 조치

### 사례 1 : 관할구청에서 적발

- 과징금 부과자 : 경기도 성남시 ○○ 구청장
- 대상자 : 이 ○○ (여, 67세)
- 대상부동산 : 전·답·임야 1,670평(경기도 성남시 소재)
- 과징금 : 3,846만 2천원
- 과징금 부과 경위
  - 1987년 7월 :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의 기존 명의신탁
  - 1996년 8월 : 실명전환 유예기간중 명의신탁 서해지약정서를 검인받은 후 실명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구청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사과정에서 적발
  - 1996년 11월 : 청문절차를 거쳐 과징금 부과 통지

### 사례 2 : 등기신청시 적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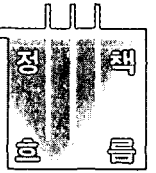
- 과징금 부과자 : 충북 영동군수
- 대상자 : 정 ○○ (남, 58세)
- 대상부동산 : 대지 72평, 건물 176평(충북 영동군 소재)
- 과징금 : 7,865만 3천원
- 과징금 부과경위
  - 1995년 7월 :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의 신규 명의신탁
  - 1996년 6월 : 명의신탁서해지약정서 검인 후 해당 등기소에 실명등기신청을 하였으나 실명법 시행 이후의 신규 명의신탁이므로 등기신청 취하
  - 1996년 11월 : 청문절차를 거쳐 과징금 부과

### 사례 3 : 이해관계자의 제보

- 과징금 부과자 :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 대상자 : 주식회사 ○○ 개발
- 대상부동산 : 전(田)·과수원 1,832평(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 과징금 : 736만 4천원
- 과징금 부과경위
  - 1995년 3월 :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의 기존 명의신탁
  - 1996년 10월 : 실명전환 유예기간중 실명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회사관계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강화군청에 고발
  - 1996년 11월 : 청문절차를 거쳐 과징금 부과 통지

### 사례 4 : 세무조사과정에서 적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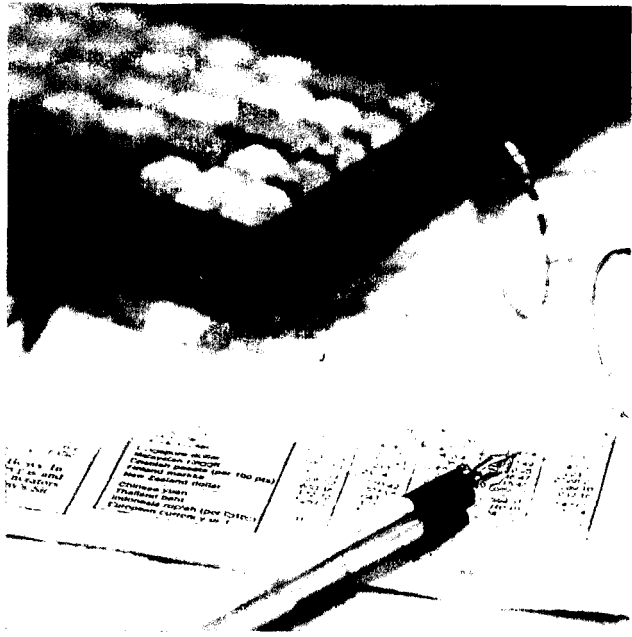
- 과징금 부과자 : 광주광역시 ○구청장
- 대상자 : 강 ○○ (남, 53세)
- 대상부동산 : 대지 197평·건물 706평(동구 소재 4층 건물)
- 과징금 : 5억 122만원
- 과징금 부과경위
  - 1994년 10월 :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의 기존 명의신탁
  - 1996년 11월 : 실명전환 유예기간중 실명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탈세제보자료에 따른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
  - 1996년 12월 : 청문절차를 거쳐 과징금 부과 통지



과징금 부과 내역 (1996년 말 현재)

(단위 : 건,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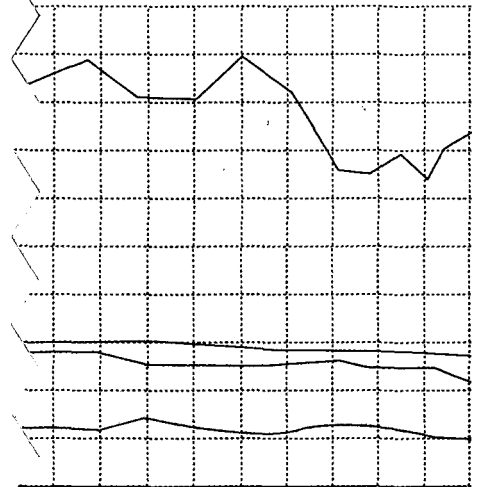
	건 수	금 액		
		합 계	토 지	건 물
서울	1	23,056	23,056	-
부산	2	104,525	97,284	7,241
대전	-	-	-	-
인천	2	10,544	10,544	-
대구	-	-	-	-
광주	1	501,220	312,865	188,355
경기	10	95,194	95,194	-
강원	-	-	-	-
충북	-	78,653	48,182	30,471
충남	1	8,904	8,904	-
전북	2	41,129	41,129	-
전남	-	-	-	-
경북	1	493	493	-
경남	2	12,075	12,075	-
제주	-	-	-	-
합 계	23	875,793	649,726	226,067



# 재정통계

## 법인세관련 통계(II)

- 1. 법인세 환급액
- 2. 법인세 및 법인세부담액 : 법인세액
- 3. 법인세 환급액 : 법인세액
- 4. 법인세 부과액
- 5. 법인세 부담액



### 1. 법인세 환급금

(단위: 백만원, %)

	법인세 총징수결정액(A)	법인세 환급발생액(B)	국세 환급발생액(C)	환 금 금 처 리			비 율	
				환부	총당	기타	발생(B/A)	점유(B/C)
1987	1,854,814	117,248	2,836,519	107,407	9,841	0	6.3	4.1
1988	2,437,382	111,983	3,297,123	94,583	17,400	0	4.6	3.4
1989	3,495,129	291,253	3,435,697	277,969	13,281	3	8.3	8.5
1990	3,957,061	648,411	4,246,457	627,452	20,959	0	16.4	15.3
1991	5,736,541	1,011,649	5,568,061	988,468	23,168	13	17.6	18.2
1992	7,725,482	1,652,702	5,978,043	1,615,999	36,703	0	21.4	27.7
1993	8,601,450	2,481,850	7,317,098	2,437,772	44,078	0	28.9	33.9
1994	10,552,115	1,652,702	8,504,432	1,615,999	36,703	0	15.7	19.4
1995	12,180,029	3,086,321	10,614,619	3,023,824	62,453	44	25.3	29.1

주: 1. 환급발생은 원천징수납부세액, 중간예납 등 세법에 의한 절차상 환급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2. 법인세심사 사무처리 : 이의신청

(단위: 건, 백만원)

	요 처 리 건 수			처 리 건 수				감 세 액	이월건수
	계	전년 이월	당년 접수	계	각하	기각	경정		
1965	240	27	213	227	16	154	57	20	13
1966	350	13	337	337	22	259	56	48	13
1967	374	13	361	348	29	250	69	24	26
1968	408	26	382	363	32	219	112	178	45
1969	906	45	861	829	100	446	283	160	77
1970	978	77	901	947	97	503	347	370	31
1971	882	31	851	816	94	390	332	187	66
1972	1,047	66	981	962	71	579	312	526	85
1973	1,462	85	1,377	1,455	125	819	511	447	7
1974	517	7	510	513	91	206	216	178	4
1975	446	6	440	427	45	185	197	155	19
1976	429	19	410	412	58	197	157	148	17
1977	362	17	345	332	81	158	93	141	30
1978	544	30	514	533	116	268	149	240	11
1979	234	11	223	228	59	97	72	683	6
1980	281	6	275	270	63	118	89	2,223	11
1981	305	11	294	272	58	131	83	743	33
1982	333	33	300	298	74	150	74	8,663	35
1983	238	35	203	214	57	122	35	308	24
1984	206	24	182	197	57	113	27	2,546	9
1985	156	9	147	146	43	92	11	190	10
1986	141	10	131	133	43	81	9	173	8
1987	99	8	91	97	32	54	11	138	2
1988	90	2	88	89	25	57	7	156	1
1989	85	1	84	81	22	49	10	293	4
1990	98	4	94	92	20	66	6	171	6
1991	86	6	80	81	21	52	8	542	5
1992	90	5	85	87	16	66	5	274	3
1993	151	3	148	144	30	102	12	2,499	7
1994	138	7	131	133	8	103	22	2,868	5
1995	135	5	130	128	22	78	28	20,309	7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3. 법인세심사 사무처리 : 심사청구

(단위: 건, 백만원)

	요 처 리 건 수			처 리 건 수				감 세 액	이월건수
	계	전년 이월	당년 접수	계	각하	기각	경정		
1965	42	4	38	42	0	13	29	37	0
1966	56	0	56	47	0	29	18	21	9
1967	113	9	104	105	3	61	41	57	8
1968	151	8	143	128	3	77	48	440	23
1969	160	23	137	119	6	65	48	383	41
1970	400	41	359	307	43	155	109	1,793	93
1971	252	93	159	213	36	116	61	408	39
1972	381	39	342	362	32	176	154	1,801	19
1973	362	19	343	308	23	159	126	1,433	54
1974	220	54	166	194	23	111	60	987	26
1975	239	26	213	198	12	113	73	971	41
1976	480	41	439	405	21	244	140	1,691	75
1977	441	75	366	377	30	208	139	875	64
1978	743	64	679	671	32	423	216	2,879	72
1979	415	72	343	369	20	210	139	1,866	46
1980	533	46	487	487	52	292	143	2,078	46
1981	492	46	446	432	51	242	139	2,921	60
1982	551	60	491	462	34	270	158	7,924	89
1983	599	89	510	549	39	395	115	3,837	50
1984	400	50	350	354	45	249	60	3,396	46
1985	350	46	304	334	31	257	46	8,457	16
1986	245	16	229	206	19	168	19	433	39
1987	217	39	178	204	22	157	25	587	13
1988	194	13	181	180	17	141	22	1,526	14
1989	250	14	236	226	11	181	34	2,751	24
1990	328	24	304	287	15	244	28	3,106	41
1991	340	41	299	281	23	232	26	1,723	59
1992	377	59	318	331	20	286	25	1,380	46
1993	459	46	413	392	40	311	41	3,622	67
1994	497	67	430	443	13	377	53	4,733	54
1995	415	54	361	377	7	330	40	2,926	38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4. 법인세 세무소송건수

(단위: 건)

	처 리 대 상 건 수			당 년 도 종 결 건 수				계류건수
	계	전년도 이월	당년 접수	계	국가 승소	국가 패소	기타	
1973	135	84	51	72	11	7	54	63
1974	111	63	48	31	17	14	0	80
1975	105	80	25	53	19	14	20	52
1976	86	52	34	43	16	18	9	43
1977	95	43	52	33	12	12	9	62
1978	115	62	53	34	19	11	4	81
1979	183	81	102	43	11	19	13	140
1980	183	140	43	76	38	29	9	107
1981	214	107	107	56	23	23	10	158
1982	235	158	77	60	30	22	8	175
1983	291	175	116	96	43	41	12	195
1984	316	195	121	99	46	37	16	217
1985	337	217	120	116	46	60	10	221
1986	316	221	95	71	26	38	7	245
1987	339	245	94	115	40	63	12	224
1988	282	224	58	88	26	49	13	194
1989	256	194	62	108	63	45	0	148
1990	250	148	102	73	50	23	0	177
1991	298	177	121	71	44	27	0	227
1992	340	213	127	108	74	34	0	232
1993	389	241	148	156	94	62	0	233
1994	353	233	120	278	95	183	0	616
1995	355	213	142	132	98	34	0	22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5. 법인세 감사

(단위: 건, 백만원)

	건수	금액
1968	238	273
1969	172	30
1970	473	541
1971	355	753
1972	309	668
1973	284	796
1974	239	651
1975	160	830
1976	460	924
1977	439	692
1978	569	700
1979	306	407
1980	322	1,188
1981	267	1,013
1982	399	3,691
1983	380	5,414
1984	449	9,321
1985	382	10,092
1986	528	7,658
1987	347	9,885
1988	472	12,898
1989	474	20,317
1990	468	37,094
1991	533	50,184
1992	567	61,279
1993	778	85,268
1994	525	72,999
1995	649	150,049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